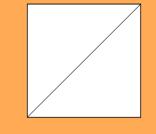
관리 번호 자연재난-01 안전기준과-3111 2020.06.16



#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20. 6.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 문화재청

#### 매뉴얼의 목적

-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6301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음.
- □ 관련 부처·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풍수해 재난」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 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 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제·개정 이력】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07.12.	ㅇ 제정		김영욱	
′15. 7.	<ul><li>마뉴얼 작성근거 보완</li><li>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li><li>문화재 재난안전대책반 구성</li><li>체계도 수정 등</li></ul>	매뉴얼 작성근거 보완 등	정금두	
′17.5.	<ul> <li>기관대응수칙 추가</li> <li>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li> <li>대응 프로세스</li> <li>부서별 협업기능</li> <li>관계기관 주요 임무</li> <li>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li> <li>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li> </ul>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마련에 따른 개정	김영호 이영훈	행정안전부 등
′17.10.	<ul><li>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치</li><li>전화번호 현행화 정비</li></ul>	정부조직개편	이영훈	
′18. 4.	<ul><li>재난대응체계도 수정</li><li>기관명칭, 비상연락망 등 세부내용 현행화</li></ul>	정부조직개편 및 현행화	김영호 박민용	
′18. 6.	o 매뉴얼 명칭 통일, 호우 특보 발표기준 개선 등 현행화	세부내용 현행화	고정주 박민용	
′18. 9.	<ul><li>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관별 임무 및 역할,</li><li>호우특보 발표기준 등</li></ul>	정부조직법 개정(′18.6.8)	고정주 박민용	행정안전부 등
'19. 8.	○ 실무매뉴얼 표준안에 따른 정비 ○ 문화재청 비상근무체계 보완 ○ 비상연락망 현행화	표준매뉴얼 및 실무 매뉴얼 작성기준안에 따른 개정	고정주 김선종	행정안전부 등
<b>′2</b> 0. 5.	<ul><li>중대본 규정에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li><li>여성가족부, 중소벤쳐기업부 유관기관 추가 등</li></ul>	<ul><li>중대본 운영 규정</li><li>및 표준매뉴얼 개정</li><li>중수해 재난 유관 기관 추가</li></ul>	고정주 김선종	행정안전부 등

# - 목 차 -

1. 일만 사양	
1. 목 적	. 3
2. 적용 범위	. 3
3. 관련 법규	. 3
4. 용어 정의	• 5
Ⅱ. <b>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b>	
1. 위기 형태	. g
2. 전개 양상	11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13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14
다. 풍수해 대응체계	16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19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21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25
2. 방 침	25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27
4. 위기정후 감시	30
5 위기 평가	32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33
나. 위기경보 절차	34
다. 상황보고·전파 ·····	35
7. 비상근무체계	36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태풍·호우	
1. 관심	43
2. 주의	43
3. 경계	44
4. 심각	44
대 설	
1. 관심	45
2. 주의	45
3. 경계	46
4. 심각	46

# ♡.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태풍·호우

1. 위기상황 49
2. 조치목록 51
3. 조치내용 52
4. 부서별 임무와 역할58
대 설
1. 위기상황 55
2. 조치목록60
3. 조치내용61
4. 부서별 임무와 역할66
VI. <b>기관대응수칙</b>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69
2. 문화재청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프로세스7(
3. 문화재청 부서별 협업기능72
4. 풍수해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74

# VII. 부 록

1.	보고서식 85
2.	과거 피해 사례 89
3.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92
4.	영상회의 시스템98
5.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100
6.	기상정보 수집관련 홈페이지114
7.	위기경보 발령사항 전파기관115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116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참석 대상기관117
10.	수습지원단의 임무와 편제118
11.	기상특보 발표기준119
12.	폭풍해일 특보 발표기준121
13.	위기평가 보고서123
14.	태풍 일자별 조치목록124
15.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125
16.	풍수해관리시스템 활용법126
17.	지자체 피해·대처상황 파악 요령129
18.	주요 기상용어131
19.	국민행동요령136

# I.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 1 목 적

이 매뉴얼은 태풍·호우 또는 대설로 인하여 인명 및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임무·역할, 대응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 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적용 범위

- 가. 태풍·호우 또는 대설로 인한 재난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위기관리활동에 적용
- 나. 태풍·호우 또는 대설로 인해 인명 및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적용

## 3 관련 법규

#### 가. 근 거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 (2)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나. 관련 법령

- (1) 「기상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
- (2)「재해구호법」,「초·중등교육법」
- (3) 「농어업재해대책법」
- (4)「하천법」,「도로법」,「도로교통법」,「항만법」,「어촌·어항법」
-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예규)
- (2)「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 (3)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훈령)」
- (4)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 (5)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양수산부예규)」
-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7) 풍수해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행정안전부)」
- (8)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구분	내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위기 경보 수준	<ol> <li>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li> <li>주의(Yellow):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li> <li>경계(Orange):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li> <li>심각(Red):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 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li> </ol>
재난 관리 단계	<ul> <li>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li> <li>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li> <li>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li> <li>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li> </ul>

구분		내용
비상상황		<ul> <li>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li> <li>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 증폭형으로 구분</li> </ul>
	결과 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 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태풍		•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째s 이상인 것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기 상 특	호우 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보	호우 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대설 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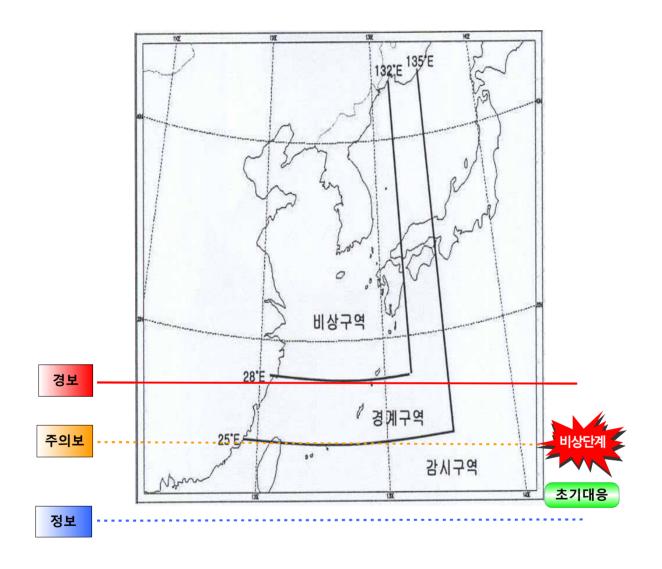
# 위기 형태

유형	형태	비고
	<ul><li>벼 등 농작물 쓰러짐, 사과 등 과일 낙과</li><li>비닐 하우스 등 농업시설 파손</li></ul>	농림축산식품부
	<ul><li>도로, 하천 등 주요 시설물 파괴</li><li>항공기·철도·지하철 운행중단</li></ul>	국토교통부 (지자체)
	• 댐 관련 주요 시설물 파괴	환경부 (지자체)
강풍	<ul> <li>선박의 직·간접 피해</li> <li>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li> <li>연안지역 침식피해 및 해상 교통두절 등</li> <li>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li> <li>어항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li> </ul>	해양수산부
	• 대규모 정전사태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재 피해(건축물 지붕 파손, 수목(당해문화재) 도괴 및 가지 부러짐, 당간지주 등 전도 등)	문화재청
	<ul> <li>농경지 유실·매몰, 저수지 등 수리시설 파손</li> <li>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li> <li>벼 등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li> </ul>	농림축산식품부
	• 어항기능 약화 : 어항 내 토사 매몰	해양수산부
호우	• 침수, 범람, 산사태(토석류 포함), 시설물 파괴 • 교통두절 - 인원 및 물자 수송 곤란 • 항공기·철도·지하철 운행중단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 하수도, 댐 관련 범람·침수, 시설물 파괴	환경부 (지자체)
	• 대규모 정전사태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재 피해(석축붕괴, 산사태, 침수, 분묘유실 등)	문화재청

유형	형태	비고
	<ul><li>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불능</li><li>고속철도, 철도 등의 두절</li><li>항공기 이·착륙 제한</li></ul>	국토교통부
	• 도로(지방자치단체 관리) 등의 교통두절 및 통행 불편	지자체
	• 고속도로 등에서의 인명 고립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도서, 산악 및 주민 산재지역의 고립	왕정인선두, 환경부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파손	농림축산식품부
대설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 피해	해양수산부
	•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붕괴	국토교통부
	• 공장 붕괴 등 기업 피해	산업통상자원부
	• 송전탑 등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ul><li>방송 시설 송출 중단</li><li>재난방송 요청 및 홍보</li></ul>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문화재 피해(건축물 지붕 붕괴, 수목(당해문화재) 도괴 및 가지 부러짐 등)	문화재청

# 2 전개 양상

## 가. 태풍 단계별 구역 및 상황전개



기상상황	태풍위치	태풍구역
태풍정보	~ 25.0° N, 135.0° E ~	감시구역
태풍주의보	25.0° N, 135.0° E	경계구역
태풍경보	28.0° N, 132.0° E	비상구역
태풍통과	동해 진출	-

#### 나. 호우특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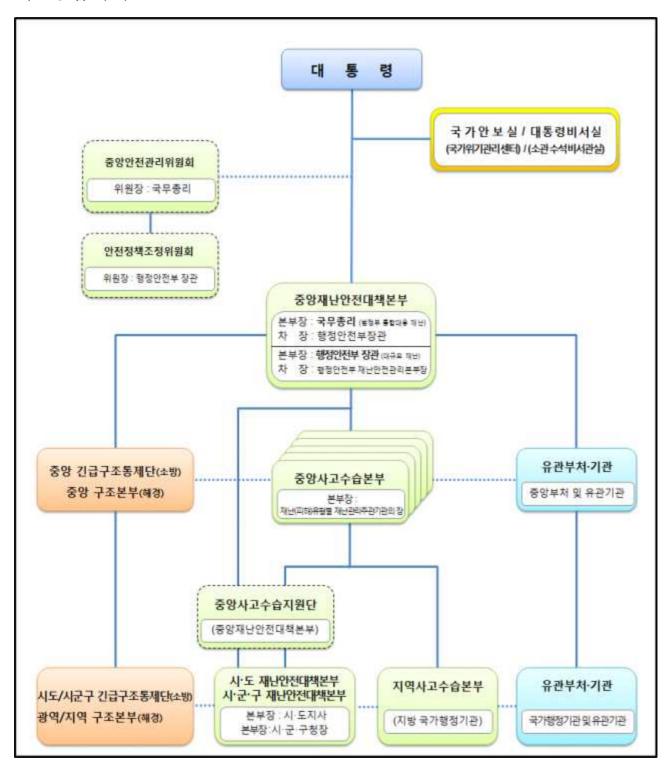
- 1) 호우주의보 :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될 때
- 2) 호우경보 :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될 때

#### 다. 대설특보

- 1)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b>국가안보실</b> (국가위기관리센터)	<ul> <li>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b>대통령비서실</b> (소관 비서관실)	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sup>*</sup>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 행사	<ul> <li>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li> <li>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li> <li>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li> <li>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설치할수 있음</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수 있음</li> <li>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중대본 미 구성 시 행안부장관이 파견)</li> <li>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li> </ul>
수습지원단	<ul> <li>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li> <li>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li> </ul>
<b>지역재난안전</b> <b>대책본부</b> (지방자치단체장)	<ul> <li>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li> <li>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부단체장)</li> <li>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li> <li>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li> </ul>

구분	임무와 역할
<b>중앙사고수습본부</b>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ul> <li>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li> <li>재난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li> <li>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li> <li>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li> </ul>
<b>중앙긴급구조통제단</b>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
(소방청장)	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
(소방본부장 또는	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소방서장)	지휘·통제를 담당
<b>중앙구조본부</b>	<ul> <li>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li></ul>
(해양경찰청장)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li>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li>
<b>광역구조본부</b> (지방해양경찰청장)	<ul> <li>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li> <li>관할 해역의 수난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RCC)간 국제적인 협력 등</li> </ul>
<b>지역구조본부</b>	<ul> <li>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li></ul>
(해양경찰서장)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세력의 효율적 운영 <li>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 편성 및 운영</li> <li>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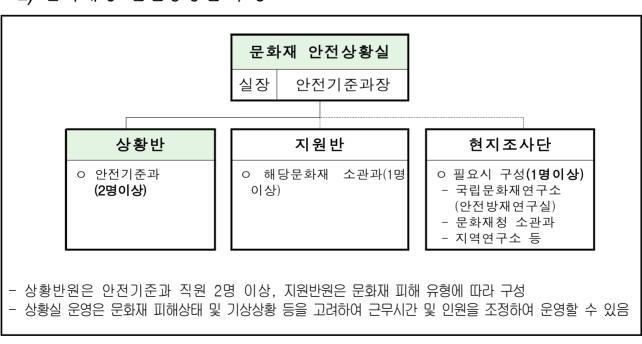
#### 다. 풍수해 대응체계

#### 1) 비상기구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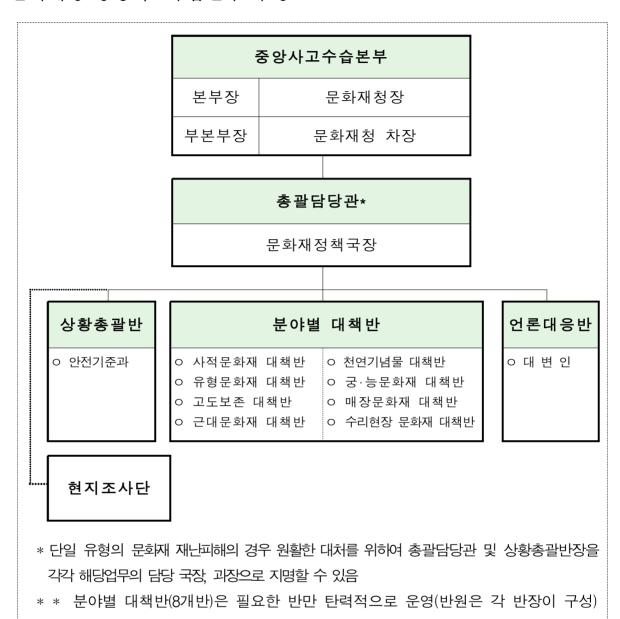
- 풍수해재난은 기상청의 '기상특보'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문화재 피해 발생우려 시 즉시 상황실 구성·운영
- 중요한 상황판단 및 총력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

구 분	운 영 기 준
상황관리	- 연중 상황관리 *집중관리 :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다음해 3.15)
*합병원대 : 여름철(3.15~10.13), 겨울철(11.15~다급해 3.13)  -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시  - 태풍 특보(주의보, 경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대설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풍수해 재난으로 지정문화재 피해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발생한 경우	
2단계 (문화재청 중수본)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필요시 중수본 가동

#### 2)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구성도



#### 3)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 ※ 소관부서 : 분야별 대책반(8개반), 언론대응반(대변인실), 안전방재연구실
- ※ 안전상황실, 대책반, 중수본의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운영

# 4) 실무반(상황총괄반, 분야별대책반, 언론대응반) 구성 및 역할

3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상황 총괄반		반장 1 반원 2 ( <b>안전과</b> )	<ol> <li>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li> <li>상황판단회의 주관</li> <li>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긴급보수비 지원 검토</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li> </ol>
	사적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보존과</b> )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유형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유형과</b>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ㅂ	고도보존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고도과</b> )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분 야 근대 별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근대과</b> )	<ol> <li>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li> <li>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li> <li>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li> <li>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li> </ol>
개 책 반	천연 기념물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천기과</b> )	1. 천기,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궁·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복원과</b> )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매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발굴과</b> )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수리과</b> )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충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언론대응반		반장 1 반원 1 ( <b>대변인</b>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소관부서 (협조부서)		
	•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			
① 재난상황관리	- 재난 발생 접수 및 진행상황 파악 - 초기 대응 및 상황보고·전파(BH, 총리실, 청·차장 등) - 피해지역 문화재 피해실태 파악 및 대처 -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 - 위기단계별 대응반 인원편성 및 운영지원(필요시) - 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 결과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응태세 점검 및 협조요청 - 중대본(행정안전부) 가동 시 지원업무 총괄 - 인명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수본 긴급특별지시 - 대처상황 총괄 보고서 작성, 신속한 보고 및 전파 - 인명 및 문화재 피해 현황 총괄 관리 등	안전기준과		
	•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등 생활안정지원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행·재정적 지원 검토(특별교부세 등)	안전기준과 (기획재정담당관)		
	• 피해시설 응급복구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문화재 안전여부 및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 피해복구계획 수립 지원 - 소관부서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 피해 복구비 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 여부 검토 - 재난발생 및 피해지역 응급 복구 장비·인력·자재 지원 - 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점검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기획재정담당관, 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 궁능유적본부 등)		

구분	활동내용	소관부서 (협조부서)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 기급 구매국물 소락 역소(운영시원과 역소)	
	• 재난현장쓰레기·환경 오염물질 처리 등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 피해 문화재 주변정리 및 손상 부재, 파편 수습 - 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조치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처리 현황 파악·관리 - 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등	안전기준과 (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 궁능유적본부 등)
	•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지원요청 및 관리	안전기준과 (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 궁능유적본부 등)
	• 문화재 재난 대응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③ 재난수습 홍보	<ul> <li>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 사항 등 홍보</li> <li>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li> <li>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li> <li>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li> <li>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li> </ul>	대변인

####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으로 표준화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 현장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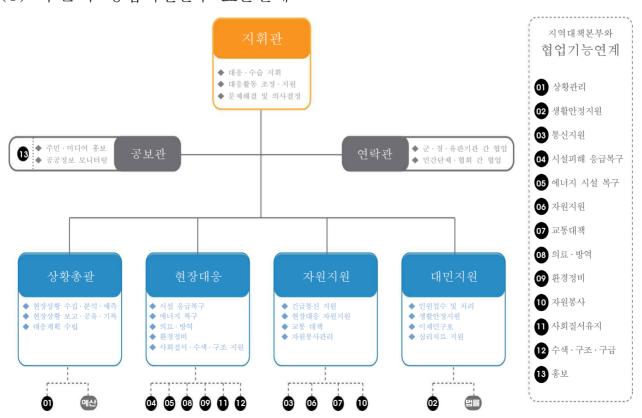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 지휘
-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 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



#### (3)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 목 표

풍수해(태풍·호우, 대설)로 인한 문화재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풍수해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위기대응기구를 신속히 구성·운영하여 초기 응급대책 실시 및 긴급 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 2 방침

- 가. 태풍·호우·대설 피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1) 각종 시설물의 방재 설계기준 규정 및 이행 점검
  - 2)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도입
- 나. 태풍 진로 예측의 정교화 및 대설 예상시 신속한 경보, 유관기관 전파
- 다. 태풍·호우·대설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의 구비 및 점검
  - 1) 태풍·호우·대설 관련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 및 점검
  - 2)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의 확보, 비축
  - 3) 태풍·호우·대설 위기 대비 교육 훈련 및 대국민 홍보 지속 실시
  - 4) 초기 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 라. 태풍·호우·대설 위기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

구 분		대 응 방 침
예방단계*		<ul> <li>풍수해 재난상황 모니터링(기상정보 시스템 확인)</li> <li>(필요시) 문화재 안정상황실 비상근무 실시</li> <li>(필요시)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li> </ul>
	초동조치	<ul> <li>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상황 신속보고</li> <li>필요시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자 비상소집</li> <li>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li> </ul>
대응단계	대응조치	<ul> <li>단계별 위기대응기구 구성·운영</li> <li>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피해 문화재 조사</li> <li>피해 지역 문화재 현장점검</li> <li>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실시요청 (방수포 설치, 전기·가스시설 차단, 도난방지대책 등)</li> </ul>
복 구 단 계		<ul> <li>문화재 복구계획 수립</li> <li>돌봄단체 등을 이용한 응급복구 지원</li> <li>문화재 복구 예산지원(긴급보수비)</li> </ul>

\* 예방단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다음해 3.15)

#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가. 위기대응 지침

1) 태풍·강풍·호우에 의한 문화재 피해 발생

구분	내 용
대응	□ 피해 범위, 규모 등 정확한 상황파악 및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목표	문화재 피해 최소화 및 2차피해 예방
	□ 기상청의 예비특보 등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b>사전대비 및 대책시행</b>
대응	□ 유관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향	□ 태풍, 강풍·호우 집중지역의 신속한 문화재 <b>피해현황 파악</b>
	□ 태풍, 강풍호우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실시
	□ 풍수해재난 <b>사전대비 및 대책시행</b>
	o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b>기상정보 모니터링</b> 을 통한
	· · · · · · · · · · · · · · · · · · ·
	사전대비체계(피해위험지역 예찰강화, 선제적 예방대책 시행 등) 구축
	* 방재 기상정보 시스템(http://afso.kma.go.kr), 날씨누리 홈페이지(http://weather.go.kr)
	□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b>비상연락체계 구축</b>
	o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군·구 문화재부서, 행정안전부 중대본
	상황실 등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대응	o 현지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한 전국의 문화재 돌봄단체와 비상연락망 구축
지침	□ 태풍·강풍·호우 집중지역의 <b>신속한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b>
	o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부서)를 통하여 ① 풍수해 재난발생
	상황, ② 문화재 피해현황, ③ 유관기관 지원 및 대응현황 등 상황 파악
	o 문화재 피해발생 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신속한 보고·전파
	□ 태풍, 강풍·호우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b>긴급조치 실시</b>
	o 문화재 돌봄단체 등을 이용한 방수포 설치, 문화재 응급보수 등
	피해최소화 대책 추진
	o 피해가 심각한 문화재, 중요문화재 등은 별도의 현지조사 실시

## 2) 대설에 의한 문화재 피해 발생

구분	내 <del>용</del>
대응 목표	□ 사전대비 및 주기적인 적설제거 등을 통한 재난피해예방
	□ 기상청의 예비특보 등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사전대비 및 대책시행
대응	□ 유관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향	□ 대설 지역의 신속한 문화재 <b>피해현황 파악</b>
	□ 주기적인 적설제거 등을 통한 2차피해 방지
대응지침	□ 대설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시행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다음해 3.15.) 기상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대비체계(제설장비 보유현황 및 소방설비 점검 등) 구축  * 방재 기상정보 시스템(http://afso.kma.go.kr)  □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군구 문화재부서, 행정안전부 중대본 상황실 등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현지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한 전국의 문화재 돌봄단체와 비상연락망 구축  □ 대설 지역의 신속한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 지자체(사도 및 사군구 문화재부서)를 통하여 ① 대설 재난발생 상황,② 문화재 피해현황,③ 유관기관 지원 및 대응현황 등 상황 파악  ○ 문화재 피해혈생, ③ 유관기관 지원 및 대응현황 등 상황 파악  ○ 문화재 피해혈생 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신속한 보고·전파  □ 주기적인 적설제거 등을 통한 2차피해 방지  ○ 폭설기간동안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붕가구, 인근보도 등의 적설을 제거하도록 독려하여 2차피해 방지  ○ 소방설비 등이 한파로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상태 등 점검

## 나. 판단/고려 요소

재난유형 고려요소	태풍·강풍·호우	대설
①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기상청의 기상정보 모니터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를 통한 현장상황 확인	▶기상청의 기상정보 모니터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를 통한 현장상황 확인
② 위기가 가중/ 확산될 수 있는 요인	▶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참수피해 등의 연계재난 발생으로 동산문화재 매몰 또는 참수 발생 → 동산문화재 수습단 구성 및 소산장소 지정 → 위급시 소유자・관리자 등이 안전한 장소로 이전	<ul> <li>▶산악지대에 위치한 문화재 거주자, 관리자 고립</li> <li>→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조 및 수습진행</li> <li>▶적설로 인한 건축문화재 붕괴</li> <li>→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조 및 수습진행</li> </ul>
③ 대 <del>응활동</del> 시 제약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강풍, 호우 등으로 문화재 현장 접근 어려움	▶집중대설로 인한 교통두절 및 인명고립

<sup>\*</sup>모든 대책은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

# 4 위기징후 감시

####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위기징후 목록	감시수단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1. 태풍 한반도 내습	1.1. 빈발시기 도래 (5.15~10.15)	○ 기상예보	○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태풍 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 기상예보	○ 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운영,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2. 국지적 집중호우로 침수, 범람 발생	1.1. 빈발시기 도래 (5.15~10.15)	○기상예보	○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호우 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 기상예보	○ 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운영,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3. 대설로 주민 고립, 교통 두절 발생	1.1. 빈발시기 도래 (11.15~다음해 3.15)	○ 기상예보	○ 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대설 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 기상예보	○ 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상황판단회의 운영,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 근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 위기징후 활동 상태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포착 시 징후정보 수집활동 강화
- (2) 감시체계 및 운용



- 기상청은 기상예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및 위기 징후 포착 시 관계기관 신속 전파, 공유
- 소관 재난유형별 관련기관(부서)의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종합·관리
- 감시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공유·전파
- 주관기관은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속도·지속시간·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 주관기관은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 운영
-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위기징후 감시·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 위기징후 감시제도 운용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자연재난대응과) ○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 징후목록 작성 $\Box$ ·목록 종합 관리 및 관리 지침 · 새로운 징후 목록 $\Rightarrow$ 방향 ○ 징후감시 $\langle \neg$ ○ 징후감시활동 발굴, 징후목록 제시 방향 제시 최신성 유지 징후 · 중점감시 대상, ○ 위기징후에 따라 정보 $\langle \neg$ 감시방법 등 ○ 위기징후 감시 소관분야 위기관리 감시 · 특이징후 집중 감시 상호 결과 ○ 징후감시활동 교류 목록 보고, 전파 ○ 주기적 징후 분석 제출 · 평가 ·재난상황관리 등에 활용

# 5 위기 평가

### 가.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

1) 목적 :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해 예상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2) 회의내용

- 가) 재난진행 상황, 기상여건, 재난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현황, 방재 자원 투입 현황 등 상황 공유
- 나)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
- 다)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결정 등
- 라)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해제여부 결정

### 나. 상황판단회의 주재 및 참석대상

종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후	
주재	안전기준과장	청장 ※ 부재시 : 차장	
참석대상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안전기준과, 대변인실,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과, 근대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발굴제도과, 수리기술과, 복원정비과)	문화재정책국장 소관부서 부서장 (안전기준과, 대변인실,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과, 근대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발굴제도과, 수리기술과, 복원정비과, 안전방재연구실)	
	※ 참석대상 소관부서는 재난 및 피해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회의장소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대회의실 (정부대전청사 1동 9층)	

※ 상황판단회의는 긴급성에 따라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가능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가. 위기경보 수준

종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ul><li>태풍, 호우, 대설 빈발 시기</li><li>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 대설의 발생</li></ul>	징후 감시활동	초기대응 단계
주의 (Yellow)	<ul> <li>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li>호우, 대설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 호우,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ul>	협조체계 가동	중대본 비상1단계
경계 (Orange)	<ul> <li>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li>호우,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ul>	대비계획 점검	중대본 비상2단계
심각 (Red)	• 태풍·호우,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태풍·호우,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즉각 대응 태세 돌입	중대본 비상3단계

- ※ 태풍, 호우, 대설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 나. 위기경보 절차

- 1) 기상청의 기상정보(태풍·호우, 대설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2)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피해상황 접수
- 3)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위하여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상황보고 전파 기준에 따라 상황전파 실시
- 4)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주요간부 및 보고기관(BH, 국조실 등)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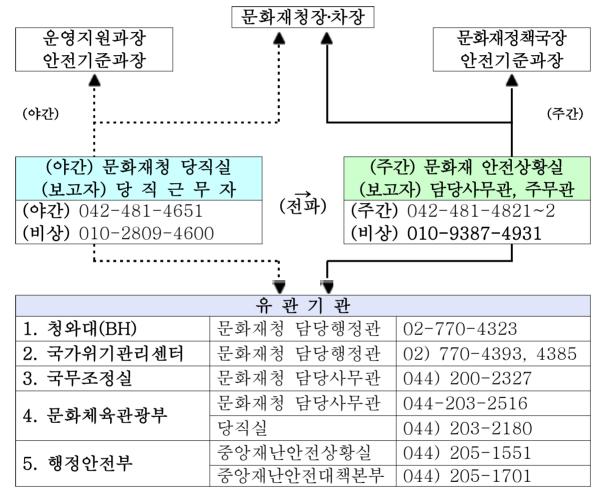
#### 다. 상황보고·전파

1) 상황보고·전파기준

구 분	내 용
지정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 별도의 보고·전파 불필요
태풍 경보 발표	
국가위기경보「심각」 단계(태풍·호우·대설) 발표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해당문화재 소관과장 - 보고내용 : 일시/장소/기상특보현황/문화재 피해 현황
지정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초동대응 및 조치상황/언론상황 등

### 2) 상황보고·전파 체계

- 보고체계: 보고 체계도에 따라 보고자가 동시보고 실시\*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부재 시 안전기준과 직원 중 최초 인지자가 보고
- ㅇ 보고자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안전기준과 직원 전원에게 전파하여 상황 공유
- 중대본 가동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처상황 발표시간 1시간 전 상황보고
   (1일 5회 / 06:00, 10:30, 16:30, 19:30, 22:30)



#### 상황보고 (예시)

[풍수해(태풍)재난 발생상황 보고]

- 일시 / 장소 : '14.09.16. 15:10 / 여수지역 상륙
- 강도 : 강( 최대풍속 : 39<sup>™</sup> 이상)
- 피해상황 :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상황 없음)
- 조치상황 ① 여수시 문화재담당자,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하여 피해상황 신속보고 요청
  - ②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예정(근무자 0명 비상응소)
  - ③ 국립문화재연구소 현지조사 요청

# 7 비상근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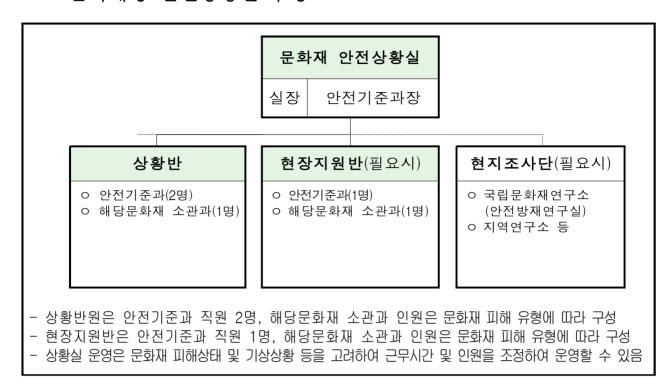
# 1) (상황관리) 별도의 위기대응 조직을 구성하지 않음

구분	내 용
운영기준	ㅇ 연중 상황관리
인력편성	ㅇ 안전기준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무관(1명)
	ㅇ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임무·역할	-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피해현황 파악 요청
	ㅇ 풍수해재난 상황 모니터링(기상특보 확인)

## 2) (1단계) 문화재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구분	내 용
운영기준	<ul> <li>○ 태풍 특보(주의보, 경보) 발표</li> <li>○ 호우 경보 4개 시·도 이상 발표</li> <li>○ 대설 경보 4개 시·도 이상 발표</li> <li>○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시</li> <li>○ 풍수해 재난으로 지정문화재 피해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li> </ul>
인력편성	<ul> <li>상황실 운영(안전기준과 2명, 소관과 1명)</li> <li>※ 단, 안전상황실 운영 전(야간 등) 상황발생 시 안전기준과 비상응소 전까지 당직실(당직자 1명)에서 상황실 업무 수행</li> <li>현장지원반 운영(안전기준과 1명, 소관과 1명)</li> </ul>
임무·역할	<ul> <li>○ 풍수해재난 발생상황 및 피해현황 보고·전파</li> <li>○ 상황 및 대처보고서 작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유지</li> <li>○ 주요 문화재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협조요청</li> <li>* 유선 또는 공문 : 안전기준과→국립문화재연구소(안전방재연구실)</li> <li>○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요청</li> <li>* 유선 또는 공문 : 안전기준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li> <li>-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 피해부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수포 설치 등의 응급조치 실시</li> <li>-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 및 가스설비 차단</li> <li>○ 중대본 파견(발령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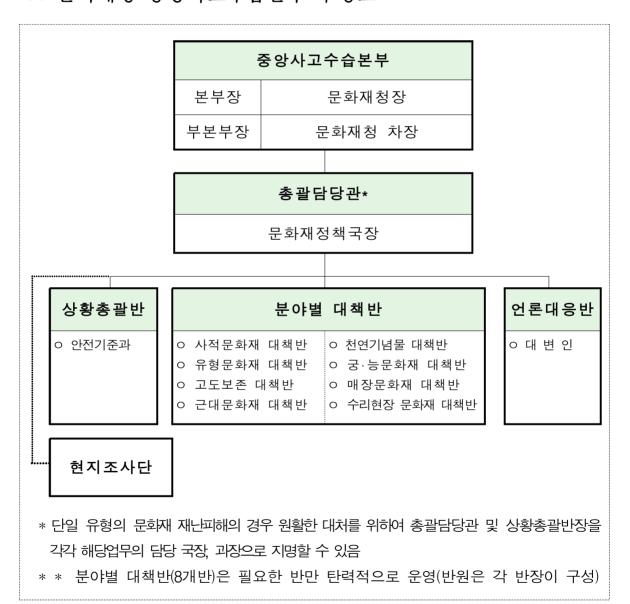
####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구성도



### 3) (2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구분	내 용
운영기준	o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필요시 중수본 가동
인력편성	○ 「 <b>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b> 참고, 안전기준과 3명, 소관과 2명
임무·역할	○ 문화재 시설 재난피해 발생 시 대응상황 총괄·관리 ○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 ※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소관부서: 분야별 대책반(8개반), 언론대응반(대변인실), 안전방재연구실

※안전상황실, 대책반, 중수본의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운영

# ※ 실무반(상황총괄반, 분야별대책반, 언론대응반)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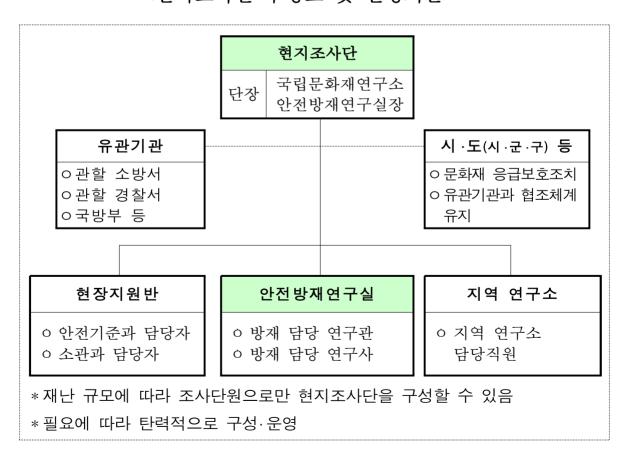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상황 총괄반		반장 1 반원 2 ( <b>안전과</b> )	1.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 2. 상황판단회의 주관 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 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사적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보존과</b> )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유형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유형과</b>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 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분	고도보존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고도과</b> )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야 별 대	근대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근대과</b> )	1. 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책 반	천연 기념물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천기과</b> )	1. 천기,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궁·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복원과</b> )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매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발굴과</b> )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 <b>수리과</b> )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언론대응반		반장 1 반원 1 ( <b>대변인</b>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 문화재청 현지조사단

구분	내 용
운영기준	o 문화재 안전상황실 요청 또는 중수본 구성·운영 시
인력편성	ㅇ 「현지조사단 구성도 및 편성기준」참고
임무·역할	<ul> <li>주요 건조물 문화재 피해조사 등</li> <li>재난발생 및 피해원인, 문화재 점검 결과, 현장대응사항 등 조사</li> <li>문화재 피해현황, 점검결과 등을 소관과, 상황반(안전기준과)에 신속 보고</li> <li>주요간부(청장차장 등) 피해현장 방문 시 피해현황 브리핑 필요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실시</li> </ul>

### <현지조사단 구성도 및 편성기준>



#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태풍·호우

1 관심

- 태풍, 호우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부 서	임무 및 역할	
	<ul><li>여름철 재난대책기간 기상상황 모니터링</li><li>실시간 기상상황 모니터링 사이트 이용</li></ul>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 http://afso.kma.go.kr ・날씨누리 http://weather.go.kr	
	•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설정·운영(5.15.~10.15)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	
궁·능·유적관리소	<ul> <li>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 풍수해 대비 문화재 주변 자체 안전점검 실시</li> <li>재난 피해 우려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li> <li>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확인</li> </ul>	

# 2 주의

• 태풍 예비특보/호우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부 서	임무 및 역할	
문 화 재 청 (안 전 기 준 과 )	<ul> <li>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자체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요청(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li> <li>안전경비원 등을 활용한 순찰활동 강화 및 문화재 주변 석축 등 자체점검 실시</li> <li>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필요시)</li> </ul>	
궁 · 능 유 적 관 리 소	<ul> <li>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문화재 피해여부 확인 등 상시 예찰활동 추진</li> <li>태풍, 호우로 인한 피해 위험지역 긴급 정비 추진</li> <li>긴급보수를 위한 인력 투입 등 긴급복구 시행</li> </ul>	

## 3 경계

• 태풍주의보/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태풍,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부 서	임무 및 역할
<ul> <li>관심·주의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문화 재 청</li> <li>안전기준과)</li> <li>풍수해 위기평가 결과를 고려한 추가대응조치 시행</li> <li>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필요시)</li> </ul>	
• 관심·주의 단계 조치 계속 실행 • 동산문화재 이동·보호 필요여부 확인 및 실시 • 비상근무조 운영	

### 4 심각

• 태풍·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태풍,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부서	임무와 역할
안전기준과	<ul> <li>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재난상황 및 문화재 피해현황 지속 파악 및 보고</li> <li>풍수해 위험지역* 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특별점검 실시</li> <li>* 위기상황판단 평가보고서에 따라 풍수해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li> <li>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운영</li> <li>보도자료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li> <li>긴급보수비 지원 검토</li> </ul>
대변인실	<ul><li>언론보도 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li>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li></ul>
소관부서 (보존과, 근대과, 유형과, 천기과, 고도과, 발굴과, 복원과)	<ul> <li>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 지원</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지원</li> <li>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li>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li> <li>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대책시행 등 협조</li> <li>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li> </ul>
수리기술과	•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ul><li>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li><li>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문화재 피해 현황 브리핑</li></ul>
궁·능유적관리소	• 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

## 대 설

- 1 관심
- 대설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대설의 발생

부 서	임무 및 역할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	<ul> <li>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설정·운영(11.15.~다음해 3.15.)</li> <li>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li> <li>사전대비 강화 요청</li> <li>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철저이행</li> <li>대설재난 위험이 높은 문화재현장 예찰활동 강화</li> </ul>
궁·능·유적관리소	<ul> <li>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중 대설 대비 문화재 주변 자체 안전점검 실시</li> <li>재난 피해 우려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li> <li>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확인</li> </ul>

# 2 주의

• 대설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부 서	임무 및 역할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	<ul> <li>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자체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요청(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부서)</li> <li>안전경비원 등을 활용한 순찰활동 강화 및 시설물 자체점검 실시</li> <li>지자체 돌봄단체 활용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제설작업 등</li> <li>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필요시)</li> </ul>	
궁 · 능 유 적 관 리 소	<ul> <li>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문화재 피해여부 확인 등 상시 예찰활동 추진</li> <li>문화재 및 주변 제설작업 등 시행</li> <li>대설로 인한 피해 위험지역 긴급 정비 추진</li> <li>긴급보수를 위한 인력 투입 등 긴급복구 시행</li> </ul>	

## 3 경계

•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부 서	임무와 역할
문 화 재 청 (안전기준과)	<ul> <li>관심·주의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li> <li>대설 위기평가 결과를 고려한 추가대응조치 시행</li> <li>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필요시)</li> </ul>
• 관심·주의 단계 조치 계속 실행 • 동산문화재 이동·보호 필요여부 확인 및 실시 • 비상근무조 운영	

## 4 심각

•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부서	임무와 역할
안전기준과	<ul> <li>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재난상황 및 문화재 피해현황 지속 파악 및 보고</li> <li>대설 위험지역 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특별점검 실시</li> <li>* 위기상황판단 평가보고서에 따라 대설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li> <li>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운영</li> <li>보도자료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li> <li>긴급보수비 지원 검토</li> </ul>
대변인실	<ul><li>언론보도 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li>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li></ul>
소관부서 (보존과, 근대과, 유형과, 천기과, 고도과, 발굴과, 복원과)	<ul> <li>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 지원</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지원</li> <li>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li>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li> <li>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대책시행 등 협조</li> <li>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li> </ul>
수리기술과	•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ul><li>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li><li>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문화재 피해 현황 브리핑</li></ul>
궁·능유적관리소	• 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

# ♡.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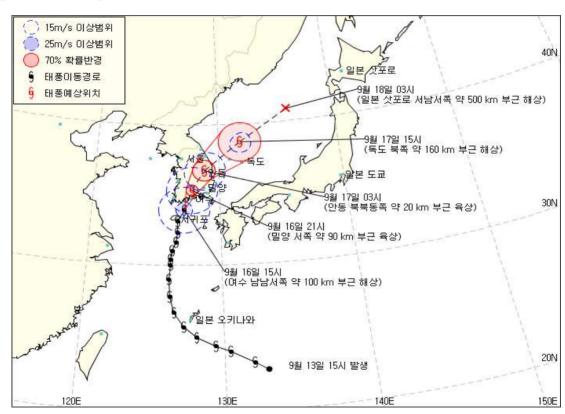
### 태풍·호우

### 1. 위기 상황

### 태풍 발생상황

대형 태풍의 발생으로 광범위지역 문화재 피해 발생

### 《기상 상황》



제 00 호 태풍 00 정보

### ○ 개요

- 태 풍 명 : 제○○호 태풍○○○

- 중심기압 및 중심부근 최대풍속 : 965 hPa / 39 1/ s

#### 태풍 발생상황

- **태풍크기** : 소형 (풍속 15%이상, 반경 : 300km미만)

- **태풍강도** : 강 (최대풍속 : 39<sup>™</sup>s이상)

### ○ 세부내용

- 현재위치 : 2014년 09월 16일 15시 현재 33.9N, 127.2E (여수 남남서쪽 약 100km부근 해상)
- 진행방향 및 속도 : 북동방향으로 30km/h의 속도로 이동 중
- **태풍특성** : ① 이 태풍은 강도는 [강], 크기는 [소형] 이며, 앞으로 북서~북진하면서 점차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 ② 이 태풍의 중심부근에는 39%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8~1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음
  - ③ 9월 16일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명 부상, ○명 실종
- 문화재 피해 : 총 ○○건 피해
  - ▶ ○○지역 고분군 봉분 및 제방 유실, 석축붕괴 등
  - ▶ ○○지역 암각화 주변 수위 상승으로 암각화 일부 침수
  - ▶ ○○지역 민속마을 00채 초가이엉 훼손으로 빗물누수 발생

# 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조 치 사 항	조치부서
가. 사전대응 (피해발생 전)		1) 풍수해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상황실 가동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3) (필요시) 문화재 피해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상황반 (안전기준과)
	1) 초동대응	1-1 풍수해(태풍, 강풍 및 호우) 피해문화재 집계 1-2 상황보고서 작성 및 재난상황 보고·전파 1-3 (요청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자 편성	상황반 (안전기준과)
		2-1 상황판단회의 개최 2-2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	상황반 (안전기준과)
	2) 대응조직 구성•운영 나.	2-3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언론대응반 (대변인)
나. 사		2-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현지조사단 (국립문화재 연구소 등)
후		3-1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방문 수행	상황반
대   응		3-2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투입계획 수립 및 지원	(안전기준과)
	3) 긴급대응 조 치	3-3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해당문화재 소관과
	ľ	3-4 풍수해재난 피해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4) 피 해	4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해당문화재 소관과
	복구활동	42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상황반
		4-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안전기준과)

<sup>\*</sup>실제 재난발생 시 매뉴얼을 따르되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3. 조치 내용

#### 가. 사전대응

- 1) 풍수해(태풍, 강풍 및 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상황실 가동
  - 태풍, 강풍, 및 호우 등의 **기상상황 모니터링** 
    - (기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 (내용) ①기상청의 방재 기상정보시스템, 국가태풍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 사전 모니터링, ②행정안전부 위기경보 접수 및 위기평가회의결과 검토
    - \*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afso.kma.go.kr)
    - \* 날씨누리홈페이지(http://weather.go.kr)
  -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상황실 선제적 가동·운영
-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자체** : 풍수해 피해 예상권역 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군·구 문화재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유관기관 : 재난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비상연락수단은 유·무선, FAX, 휴대폰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3) (필요시) 문화재 피해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강화 요청**(문화재청 → 지자체)
    - (대상) 기상상황, 행정안전부 위기평가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풍수해 피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 (내용) 피해위험지역 순찰 및 예찰강화, 문화재수리현장 안전 조치 시행, 피해우려 문화재 방수포 설치 등 조치 요청
      - \* 풍수해재난 문화재 피해발생 시 즉시보고 요청
  - 전국의 문화재 돌봄단체를 활용한 **응급조치 시행**

### 4)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 (대상/기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등/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내용) 문화재 주변 석축, 배수로 정비상태 및 방재설비 가동상태 점검
-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위험요인 제거

#### 나. 사후대응

### 1) 초동대응

#### 1-1 풍수해(태풍, 강풍 및 호우)재난 피해문화재 현황집계

- 문화재 피해현황, 대응조치 상황 파악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시·군구 문화재담당부서, 문화재청 현지조사단에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요청 (공문, 유무선 등 이용)
- 풍수해재난 피해문화재 현황 공유(안전기준과 → 해당문화재 소관과)

### 1-2 상황보고서 작성·공유 및 보고

- 기상상황, 문화재 피해현황, 대응조치, 언론 모니터링,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문화재 소관과와 공유
- 상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주요간부(청차장, 국장 등)에게 보고

###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중대본 요청시)

- (파견자) 문화재청 직원 1명
- (주요업무) 중대본과 문화재청 상황실(안전기준과)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현황 공유 및 문화재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문화재 재난 수습에 필요한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
- (근무자 편성) 중대본 24시간 파견 근무를 위한 근무자 편성
  - 최초근무자 : 안전기준과 직원 1명 비상근무 즉시 투입
  - 최초근무자 이후 각 소관과로부터 비상근무인원 각 2명 지원요청 후 근무자 편성

### 2) 대응조직 구성·운영

#### 2-1 상황판단회의 개최

- (목적) 비상기구 가동수준, 문화재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문화재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주재) 문화재청장 (부재 시 차장)
- **(참석대상)** 문화재청 차장, 총괄담당관, 안전기준과장, 대변인, 해당문화재 담당과장, 관련전문가 등
- **(회의내용)** ① 풍수해재난 상황(기상여건 등), 문화재 피해현황, 방재자원 투입 현황 등 상황 공유
  - ②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 수준 결정
  - ③ 풍수해 피해문화재에 대한 응급복구, 문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 중수본 가동 전, 상황판단회의 경우 안전기준과장 주재, 해당문화재 담당사무관 등 참석(32p 참조)

### 2-2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문화재청장, 부본부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함
-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반 구성·운영
  -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되 각 실무반별 2명씩 비상소집

### 2-3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언론보도 최소화
    - \*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피해현황 및 청 차원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 문화재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문화재 피해현황, 대처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 2-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구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또는 피해현장 인근 연구소 등 \* 현지조사단은 신속한 문화재 피해 등의 상황정보 파악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음
- (임무역할) 국보 등의 주요 문화재 현장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
  -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관련 보고서 작성
  - 육안 및 계측조사 내용을 상황반(안전기준과), 소관 과로 즉시 보고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 3) 긴급대응 조치

### 3-1 (필요시)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계획 수립
  - 국보·보물 등의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피해현장, 시·군·구 등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문계획 수립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문화재청장 피해현장방문 수행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사항 수렴
    - \*단일 유형의 문화재피해의 경우 해당문화재 소관과에서 수행

### 3-2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 문화재돌봄사업단(보존정책과), 문화재청 직영사업단(궁능유적본부), 문화재 수리기능인협회(수리기술과) 등의 단체와 협의하여 응급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응급복구 사업단 투입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응급복구 진행상황은 해당 소관과에서 조정·관리

#### 3-3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요청, 위험현장은 출입금지 등의 통제선 설치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문화재가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가 발생 시 가스 및 전기시설 차단 요청
- 동산문화재 보호대책 강구
  - 동산문화재 소장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산문화재 긴급 보호조치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피해가 없는 인근 박물관 수장고로 이동 및 임시 보관 조치
  - 동산문화재 피해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 강구 (문화재청)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요청 (문화재청—씨·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파손부재가 일반폐기물로 오인되어 일괄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 통보 및 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요청
  - 목재 등의 파손부재는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현장 내 임시 적치소 설치 등의 방법으로 보호대책 강구 요청

### 3-4 풍수해 피해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풍수해 피해지역 지정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 점검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동산문화재 피해 발생 시 동산문화재 피해조사반도 함께 편성하여 점검 실시
- 문화재 안전점검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편성

### 4) 피해복구 활동

### 4-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중대본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재난피해조사단) 파견 요청이 오는 경우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 구성
  - (구성) 안전기준과 1명, 문화재 소관과 각 1명으로 구성 \*소관 국가지정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관과 직원 1명 참여

- (역할) ①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②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피해문화재 및 지원액 확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제3항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은 조사결과를 상황반(안전기준과)으로 통보하여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에 관한 정보 공유

#### 4-2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 중대본「재난피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면 해당계획에 의거하여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수립·시행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 지원방법 결정 (긴급보수비 또는 총액보수비)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9조제1항
-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긴급보수비, 총액보수비 지원

#### 4-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 지속관리
  - 지자체 문화재부서를 통해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현황 추적 관리
- 피해문화재 중 복구 추진에 차질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국고 보조금 지원 등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상황총괄] o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 : 안전기준과장, 정책국장, 차장, 청장 o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 [대응조직 가동 운영·총괄]
안 전 기 준 과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총괄: 근무자 편성, 근무실시 o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 [소관 문화재 복구 지원]
	o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
	o 야간 상황 유지(당직실) : 지자체 상황실로부터 상황접수
운 영 지 원 과	
	내용 통보 및 비상소집
소 관 부 서	
(보존정책과 근대문화재과	
궁능유적본부	o 풍수해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o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복원정비과)	o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대책시행 협조요청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고도보존육성과	[소관 문화재 복구 총괄] o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지원
발굴제도과)	o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스 키 키 스 키	
구디기물과	o 풍수해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
	[언론대응 총괄]
대 변 인	o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
	o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
	o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국립문화재	[현지조사 총괄]
연 구 소	o 피해 문화재현장 현지조사 실시
(안전방재연구실 또는 지역별 연구소)	- 관계전문가, 관계직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현지파견
	- 육안점검 또는 계측조사를 통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o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보존과학센터	-
_ , , _ ,	o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대 설

### 1. 위기 상황

#### 대설 발생상황

#### 대설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 개 요
- 대설 경보 발표
- 발표시각 : 0000년 1월 7일 09시00분
- 해당구역 : 강원도, 경상북도
- **발효시각** : 0000년 1월 7일 09시00분
- 세부 내용
- 내 용 : 위 구역(강원도, 경상북도)에 대설경보를 발표함
  - ▶ 현재적설(1월 7일 09시00분 현재) : 9~11cm
  - ▶ 앞으로 예상적설(현재~오늘밤까지): 15~25cm
  - ▶ 총 예상적설 : 25~35cm
- 특보발표현황 : 대설경보(강원, 경북), 대설주의보(충남·충북)
- 고속도로 통행불가지역 발생
- 심야시간대의 강설로 7일 07시경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차량 10중 추돌사고 발생 및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 강설 및 차량추돌 사고로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가 교통통제

### 《피해발생 상황》

- 인명피해 : 부상○명, 고립60여명
- 인명고립 : 강원도 산간지역 문화재소재 사찰 3개소 내 60여명 고립
- 지정문화재 피해 : 총○건 피해발생 (1월 8일 18시00분 기준)
  - ▶ 고성 왕곡마을 내 가옥 0채 지붕가구 일부 붕괴
  - ▶ 강릉 선교장 내 가옥 0채 기와탈락 및 굴뚝 전도
  - ▶ 오죽헌 어제각, 불영사 대웅보전 지붕기와 탈락 및 담장 일부 붕괴

# 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부서
가. 사전대응 (피해발생 전)		<ol> <li>대설 재난상황 모니터링</li> <li>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대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강화 요청</li> <li>겨울철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ol>	상황반 (안전기준과)
나. 사 후 대 응	1) 초동대응	1-1 대설 피해문화재 집계 1-2 상황보고서 작성 및 재난상황 보고·전파 1-3 (요청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자 편성	상황반 (안전기준과)
	2) 대응조직 구성•운영	2-1 상황판단회의 개최 2-2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	상황반 (안전기준과)
		2-3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언론대응반 (대변인)
		2-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현지조사단 (국립문화재 연구소 등)
	3) 긴급대응 조 치	3-1 (필요시)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병문 수행	
		3-2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ㅇ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ㅇ파손 부재 보호 및 관리 요청	상황반 (안전기준과)
		3-3 대설재난 피해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해당문화재 소관과
	4) 피 해 복구활동	4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해당문화재 소관과
		42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상황반 (안전기준과)
		4-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상황반 (안전기준과)

<sup>\*</sup>실제 재난발생 시 매뉴얼을 따르되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3. 조치 내용

#### 가. 사전대응

### 1) 대설 재난상황 모니터링

- 대설 등의 기상상황 모니터링
  - (기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다음해 3.15.)
  - (내용) ① 기상청의 방재 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 사전 모니터링, ②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접수 및 위기평가회의결과 검토
  - \* 방재 기상정보 시스템(http://afso.kma.go.kr)
- 대설 재난으로 지정문화재 피해발생 또는 우려 시 안전상황실 가동운영

###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피해대설 피해 예상권역 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군·구 문화재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비상연락수단은 유·무선, FAX, 휴대폰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3) 대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강화 요청** (문화재청 → 지자체)

- (대상) 행정안전부 위기평가회의 결과,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을 바탕으로 대설 피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 (내용) 피해위험지역 순찰 강화, 문화재수리현장 안전조치 시행, 제설용품 구비, 적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 등

### 4) 겨울철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대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 (대상/기간) 국가지정문화재 30여건/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내용) 문화재 주변 안전관리상태, 제설용품 구비, 소방설비 동파방지를 위한 관리상태 등 점검
-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위험요인 제거

### 나. 사후대응

### 1) 초동대응

### 1-1 대설재난 피해문화재 현황집계

- 문화재 피해현황, 대응조치 상황 파악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시·군·구 문화재담당부서 등에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요청 (공문, 유·무선 등 이용)
- 대설재난 피해문화재 현황 공유(안전기준과 → 해당문화재 소관과)

#### 1-2 상황보고서 작성·공유 및 보고

- 기상상황, 문화재 피해현황, 대응조치, 언론 모니터링,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문화재 소관과와 공유
- 상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주요간부(청장, 차장, 국장 등)에게 보고

###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중대본 요청시)

- (파견자) 문화재청 직원 1명
- (주요업무) 중대본과 문화재청 상황실(안전기준과)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현황 공유 및 문화재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문화재 재난 수습에 필요한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
- (근무자 편성) 중대본 24시간 파견 근무를 위한 근무자 편성
  - 최초근무자 : 안전기준과 직원 1명 비상근무 즉시 투입
  - 최초근무자 이후 각 소관과로부터 비상근무인원 각 2명 지원 요청 후 근무자 편성

### 2) 대응조직 구성·운영

#### 2-1 상황판단회의 개최

- (목적) 비상기구 가동수준, 문화재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문화재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주재) 문화재청장 (부재 시 차장)
- (참석대상) 문화재청 차장, 총괄담당관, 안전기준과장, 대변인, 해당문화재 담당과장, 관련전문가 등
- **(회의내용)** ① 대설재난 상황(기상여건 등), 문화재 피해현황, 방재자원 투입 현황 등 상황 공유
  - ②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 수준 결정
  - ③ 대설 피해문화재에 대한 응급복구,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 중수본 가동 전, 상황판단회의 경우 안전기준과장 주재, 해당문화재 담당사무관 등 참여(32p 참조)

### 2-2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문화재청장, 부본부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함
-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반 구성·운영
  -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되 각 실무반별 2명씩 비상소집

### 2-3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언론보도 최소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피해현황 및 청 차원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언론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 문화재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문화재 피해현황, 대처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 2-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구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또는 피해현장 인근 연구소 등 \* 교통 통제 및 대설로 인한 고립 등으로 문화재 현장에 접근 불가능한 경우는 미편성
- (임무역할) 국보 등의 주요 문화재 현장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
  -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관련 보고서 작성
  - 육안 및 계측조사 내용을 상황반(안전기준과), 소관 과로 즉시 보고
  -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 3) 긴급대응 조치

### 3-1 (필요시)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계획 수립
  - 국보·보물 등의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피해현장, 시·군·구 등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문계획 수립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문화재청장 피해현장방문 수행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사항 수렴

### 3-2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요청, 위험현장은 출입금지 등의 통제선 설치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문화재부서)
  -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책 시행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문화재부서)
  - 파손부재가 일반폐기물로 오인되어 일괄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 통보 및 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요청
  - 목재 등의 파손부재는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현장 내 임시 적치소 설치 등의 방법으로 보호대책 강구 요청

### 3-3 대설재난 피해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대설 피해지역 지정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 점검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문화재 안전점검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편성

### 4) 피해복구 활동

# 4-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중대본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재난피해조사단) 파견 요청이 오는 경우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 구성
  - (구성) 안전과 1명, 문화재 소관과 각 1명으로 구성
    - \*소관 국가지정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관과 직원 1명 참여
  - (역할) ①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②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피해문화재 및 지원액 확정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8조제3항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은 조사결과를 상황반(안전기준과)으로 통보하여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에 관한 정보 공유

### 4-2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 중대본「재난피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면 해당계획에 의거하여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수립·시행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 지원방법 결정 (긴급보수비 또는 총액보수비)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9조제1항
-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긴급보수비, 총액보수비 지원

### 4-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 지속관리
  - 지자체 문화재부서를 통해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현황 추적 관리
- 피해문화재 중 복구 추진에 차질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등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상황총괄] o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 : 안전기준과장, 정책국장, 차장, 청장 o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
안 전 기 준 과	[대응조직 가동 운영·총괄]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총괄: 근무자 편성, 근무실시 o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
	[소관 문화재 복구 지원] o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
운 영 지 원 과	o 야간 상황 유지(당직실): 지자체 상황실로부터 상황접수 o 야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기준과장과 안전기준과 직원에 관련 내용 통보 및 비상소집
소 관 부 서 (보존정책과 근대문화재과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고도보존육성과 발굴제도과)	[소관 문화재 복구 총괄] o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지원 o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수 리 기 술 과	o 대설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
대 변 인	[언론대응 총괄] o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 o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 o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국 립 문 화 재 연 구 소 (안전방재연구실 또는 지역별 연구소)	[현지조사 총괄] o 피해 문화재현장 현지조사 실시 - 관계전문가, 관계직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현지파견 - 육안점검 또는 계측조사를 통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o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보존과학센터	[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o 대설 피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o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Ⅵ.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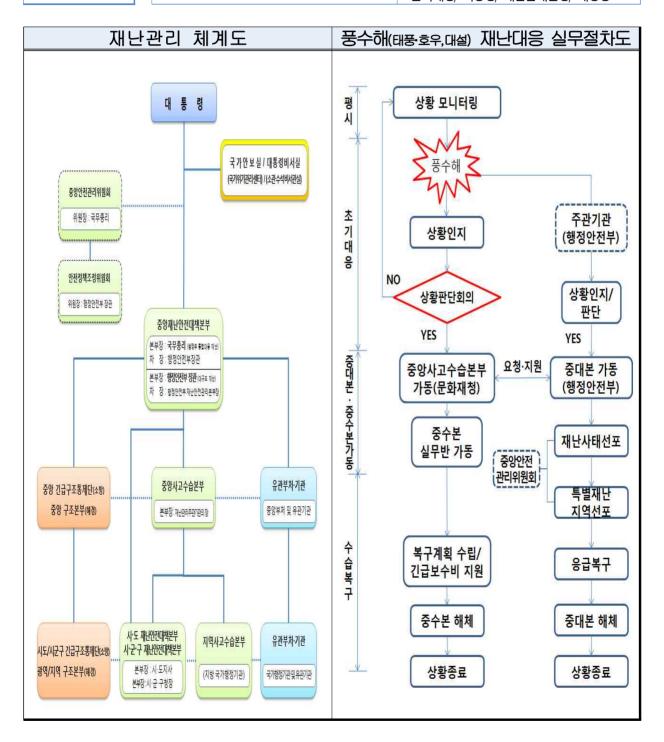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관리번호 : 자연재난-01

#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관련 매뉴얼

○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행정안전부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방통위,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해경청



# 2. 문화재청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 분

#### 재난 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초기대응 및 안전상황실 운영 단계

#### 안 전 기 준

ᄎ

기

대

응

부

Н

#### 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접수
  - 기간 : 여름철(5.15.~10.15.) 및 겨울철(11.15.~3.15.)
  - 내용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 및 국가태풍정보시스템 모니터링
- 재난상황 보고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 청장·차장(동시보고)
  - \*풍수해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지정문화재의 피해 우려 시
  - \*피해 문화재 소관과에 피해 현황 전파
- **피해현황 확인요청** : 안전상황실 → 풍수해발생지역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및 재난대책본부

####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준비

-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비상소집(2명)
- 중대본 요청시 '중대본 상황실' 파견근무 투입

#### 해당 문화재 소관 부서

#### • 초기 재난 및 피해상황 파악

- 재난상황, 문화재 피해현황, 대응 조치 등 파악
- 안전기준과 요청시 비상근무자 편성 및 비상응소

# $\Box$

####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 추가 재난상황 정보수집·전파, 피해현황 집계
-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진행상황 보고
-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요청 및 연락체계 구축
  -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개최

#### • 추가 재난상황 및 소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등 파악
- 재난 수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 문화재돌봄사업단, 직영사업단 등을 이용한 응급복구계획 수립
-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참석 및 지원
  - 회의결과에 따른 대책 시행 및 비상근무 실시

#### 청 · 차 장

#### 초기상황 확인

- 문화재 피해현황 및 현장 조치사항 파악(안전기준과 보고)
- (필요시) 관계 기관장·지자체장 등과 유선통화로 현장상황 파악 및 협조사항 요청

#### 조치사항 지시

- 긴급조치사항 지시
  - 문화재 피해현황 신속 파악
  - 인명피해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2차 피해 확산방지 대책 강구

####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주재

- 피해현황, 대응상황, 향후조치계획 등 확인
- 각 소관부서별 비상근무 여부 및 수준 결정
- 지대본 지원 필요사항 확인
  - 문화재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검토
-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지시

#### 총괄 담당관

- 초기상황 확인 :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 등(안전기준과 보고)
- 안전상황실에 긴급조치 및 대응 지시
  - 안전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및 긴급조치사항 지시
  - 청장·차장 지시사항 이행 등



-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 상황에 따라 청장·차장 대행 및 상환판단회의 주재
- 청장·차장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

# 담당관

- 재난상황 및 문화재 피해현황 확인
  - 안전기준과로부터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작성 준비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배포
- 문화재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대 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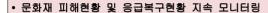
재난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단계

(중대본 운영: 행정안전부)

-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현황 집계
-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진행상황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중대본 협조요청사항(중대본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등) 총괄 조정
  - 문화재청장 현장 방문 수행 등

- 피해 복구상황 모니터링 (계속)
-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 피해 신속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지원



- 재난 수습을 위한 대책 지속 실시
  - 문화재돌봄사업단, 직영사업단 등을 이용한 소관 문화재 응급복구 지속실시
- 풍수해발생 지역 인근 소관 문화재 점검
- 중대본 파견근무 지원

####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풍수해로 인한 소관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수습·복구 단계

-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피해문화재 및 지원액 확정
- 피해 문화재 복구계획 수립
  - 피해 복구를 위한 문화재 보수비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휘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총괄 지휘
  - 사고수습대책회의 주재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등 지시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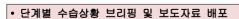
####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 지시

-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 지원지시
- 피해복구계획 및 예산지원 등 사후대책 수립 지시
-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지시
-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필요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풍수해 피해 문화재 현장방문

- 풍수해발생지역 지대본 및 주요 피해 문화재 현장 방문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현장방문 시 수행
- 청장·차장 보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청장·차장 피해현장 방문 시 수행
- 청장·차장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 (계속)

- 청장·차장 피해현장 방문 시 수행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문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지시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필요시) 대국민 담화문 작성

- (필요시) 청장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표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오보에 대해 적극대응으로 혼란 방지





# 3. 문화재청 부서별 협업기능(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④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주 관 부 서	안전기준과	안전기준과 (기획재정담당관)	문화재 유형별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기획재정담당관, 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궁능유적본부 등)
연 계 부 처	(기상청 등)	(기재부, 교육부 등)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요 무	<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 >       -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 시중수본 기동 -       아재난 발생 접수 및 진행상황파악       소치기 대응 및 상황보고·전파(청와대, 국조실, 청·차장 등)       - 피해지역 문화재 피해실태파악 및 대처       ·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       · 위기단계별 대응반 인원편성및 운영지원(필요시)       · 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 결과에 따른중앙사고 수습본부 설치       ·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응태세점검및 협조요청       · 장대본(행정안전부) 가동 시지원업무 총괄       · 인명 및 문화재 피해최소화를 위한 중수본 긴급특별지시       · 대처상황 총괄 보고서 작성,신속한 보고 및 전파       · 인명 및 문화재 피해 현황 총괄관리 등	< 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행・재정적 지원 검토 (특별교부세 등)	<ul> <li>&lt; 피해시설 응급복구 &gt;</li> <li>○ 문화재 안전여부 및 피해상황</li> <li>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li> <li>○ 피해복구계획 수립 지원</li> <li>○ 소관부서별 피해시설 응급복구</li> <li>○ 피해 복구비 지원요청 시 국고보조 여부 검토</li> <li>○ 재난발생 및 피해지역 응급 복구 장비·인력·자재 지원</li> <li>○ 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점검</li> </ul>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⑬ 재난수습홍보
안전기준과 (운영지원과)	안전기준과 (수리기술과, 궁능유적본부 등)	안전기준과 (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 궁능유적본부 등)	대변인
(국방부, 조달청 등)	(환경부, 해수부 등)	(행안부 등)	(방통위, 문체부 등)
(국방무, 조달정 등)  <재난으로 인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  ○ 응급의료 자재·인력・장비  ○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운영지원과 협조)	(환경무, 해수무 등)  <재난현장쓰레기·환경 오염물질 처리 등>       피해 문화재 주변정리 및 손상부재, 파편 수습      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조치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처리 현황 파악·관리      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등	(행안무 등)  <재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지원 요청 및 관리	(방통위, 문체무 등) <문화재 재난 대응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 4. 풍수해(태풍·호우,대설)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 처	초기대응 및 중대본 1단계
문화재청	• 문화재 및 문화재보유시설물 피해 예방 조치 시행 및 점검 • 문화재 위치정보 제공 • 문화재 이운 및 소산계획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 중앙재난대책본부-과기부·방통위-방송사간 협조체계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확인
국방부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유지
행정안전부	• 보강근무 실시(상황실, 자연재난대응과) • 상황파단회의 개최 - 비상근무 실시 여부 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결정 • 광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의 개최(필요시) • 태풍 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 • 대설예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
문화체육관광부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사전대비 철저 등) 지원 ·소관시설물 안전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관리책임자 현장 배치 및 점검 등 수리시설 관리강화 •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보호와 관리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가축보호대책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가스·석유시설 <del>및 산업공단 등 각종 산업시설의</del> 안전관리 질태 확인 및 재난대응체계 파악 • 주민생활편의시설 에너지기능 조기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확인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 점검 • 재해지역 방역 대책수립 • 소과시설물 안전점검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통제 •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등 급수계획 수립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홍수 관련 사항실 문) •홍수지 하천시설 (문) 명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전격·확인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계획 및 혹수의 예보·경보 시스템 점검 •재해복구사업 현장(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피해재발방지 조치
여성가족부	•기상 및 풍수해 새난상왕 모니터링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활동 관련기관에 기상상황 전파  •외부활동 자제 권고, 시절관리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 육상·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파악 및 체계 점검 • 태용·호우로 인한 교통두절 교통수통대책 수립 • 취약지 하처시설(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제외)의 점검 및 확인 • 재해복구사업 현장(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제외) 피해재발 방지 조치 • 도로제설대책 마련 • 긴급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해양수산부	● 선박대피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 조치 ● 주산 중·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 어항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상특보 모니터링 고나련 기관 단체 비상연락망 정비 •강풍·호우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 가동
경찰청	•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태세 유지 • 재난피해박생지역 직서 및 치안유지 계획 수립
소방청	• 접근곤란 예상지역 혀황 파악 및 인명구조·대피계획 수립 •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약 및 지원
산림청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점검 •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피해예방 조치 •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예측정보 제공 및 관리 • 표고재배시설, 양묘장, 조경수재배지 등 시설관리
기상청	•태풍·호우·대설에 대한 기상정보 생산 및 전파
새 만금개 발청	·새만금지역내 태풍·호우·대설 대비 계획 수립
해 양경 찰청	•경비함정, 항공기, 중앙특수구조단 등 구조세력 긴급출동·구조태세 유지

부 처	중대본 2·3단계
문화재청	• 문화재 및 문화재보유시설물 응급조치 • 문화재 위치정보 제공 • 문화재 이운·소산 및 인명 대피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의 요청 및 지속 홍보 요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통신두절 지역 소통 지원 · 긴급 지휘 통신망 운영 지원
교육부	• 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실시 • 학교시설의 이재민 대피시설로 제공
국방부	• 긴급 인력·장비 지원 준비 및 인명구조 지원 • 현조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발생 초기 대응조치 총괄, 필요시 심속 지원 • 중앙재난아저대책보부 우영 상황보고 및 저파 • 지자체장회의를 통한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전달(대응 철저)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업•지원 및 총괄•조정 • 재난방송의 요청 • 언론 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 민간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태궁 발생 판단 성두의 내서상왕, 계획 등의 홍모  •대설 대처를 위한 정부의 대처상황, 계획 등의 홍보  •국가적 혼란 상황발생시 대국민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 양·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방조제 수문 조절 •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가스·석유 등의 공급중단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실시 • 소관시설물 조기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책 추진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가동 및 지원 •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통제기능 강화, 고립인명 구조 • 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우도 시설 응급 복구 •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의 예보·경보 발령 등)
여성가족부	• 전국 수련시설 피해조사 실시 • 피해 시설 순찰 강화 및 응급조치 • 수련시설 피해조사, 수련활동 운영기관 외부활동 자제 통보
국토교통부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항공기 철도 등 수항통제 및 현황 파악 •도로제설 추진상황 관리
해양수산부	•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점검, 강화 • 소형어선 육지인양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 취약시설 예찰, 안전점검 및 응급 보강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워대책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즉각 대응태세 확립 • 필요시 자금지원, 특례보충
경찰청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소방청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산림청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 산사태 발생시 응급 복구 지원
기상청	·태풍진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대설대처를 위한 질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대언론 및 대국민 브리핑 실시(필요시)
새 만금개 발청	• 새만금지역내 재해취약지역 순찰 강화
해양경찰청	• 특보 발표 시 규정에 따른 어선 여객선, 유·도선 출항 통제 • VTS의 해상교통관제 강화 및 통항선박 대상 기상청보 제공 • 해양사고시 해상 인명구조 활동

부 처	복구단계
문화재청	•소관시설 피해현황 조사 및 응급복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재난방송의 요청 및 지속홍보 협조 •재난대책본부-과기부·방통위-방송사간 재난방송 지원
교육부	• 학교시설 등의 피해시설 응급 복구 •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이재민 장기수용 협조
국방부	• 인력·장비 및 인명구조 지원 • 필요시 피해발생지역의 예비군 훈련 조정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피해 상황 총괄 및 통합지원 • 특별재단지역건의 및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시행(정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 복구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재해구호기금 및 물자의 모금•분배 •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지역수리 세금감면 등 재정적 검토 •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국민성금 검토(필요 시)
문화체육관광부	·피해발생 관련 정부의 복구상황 등의 홍보지원 ·소관시설 등의 피해시설 응급 복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 수습·복구 • 농기계 무상수리 복구계획 수립 시달 • 농축산물 수급안청을 위한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생활편의 시설 응급복구 추진 •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광역지원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재해지역 방역대책 추진
환경부	• 쓰레기 처리 및 비상급수 대책 시행 • 재해복구사업(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응급복구 추진
국토교통부	•도록, 철도 비행장 등의 응급 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추진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수립 추진 •재해복구사업(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제외)
해양수산부	• 수산 증·양식시설 응급복구 및 폐사 어류 제거 • 어항, 항만 시설 응급복구 추진 • 침몰선박 인양 등 피해선박 응급 복구 및 해양쓰레기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전통시장·소상공인 피해 응급복구 및 지원
경찰청	• 피해 발생지역의 치안유지 • 인력·장비 등 피해 수습·복구 지원
소방청	• 피해 발생지역 사망·실종자 수색 •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및 단수지역 생활급수 지원
산림청	• 산사태 발생지역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 복구 추진
기상청	
새 만금개 발청	• 새만금지역내 피해 복구 추진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 발생 시 수습·복구 • 중수본, 지자체 등 요청 시 인력·장비 등 피해 수습·복구 지원

# 5. 비상연락망

# 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 행정안전부(주관기관)

분 야	직 위(급)	연 락 처	비고
태풍·호우	팀 장	044-205-5235	
대중·오구 	담 당	044-205-5239	
대설	팀 장	044-205-5236	
	담 당	044-205-5238	

# □ 유관기관

기 관	부 서	연락기	<b>न</b>
기 선	구 시	전 화	팩 스
청와대	국정상황실	02-770-4284	02-770-4798
श्चा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4~5	02-770-4887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2	044-200-2367
바소트시이의하	정보보안팀	02-2110-1314	02-2110-0135
방송통신위원회 	야) 당직실	02-2110-1590	02-2110-0125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15-2681~5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044-203-6791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262	044-203-6305
	야)당직실	044-203-6118~9	044-203-65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10-2167	02-2110-0278
	합참지휘통제실	02-748-0300	02-796-0369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3	02-748-5778
국방부	재난대책상황실	02-748-3181~3	02-748-5795
10T	육군 재난대책상황실	042-550-0400	042-551-0666
	해군 재난대책상황실	042-553-0391	042-551-0449
	공군 재난대책상황실	042-552-6644	042-551-3399
	홍보정책과	044-203-2918	044-860-4852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90	044-203-3458
	야) 당직실	044-203-2180	044-203-3452
노리츠사시프ㅂ	비상안전기획관	044-201-1474	044-868-7909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5	044-868-7253

71 71	ы	연락처	
기 관	부 서	전 화	팩 스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5580	
C 8 8 6 7 E T	종합상황실(주·야)	044-203-4000~1	044-203-4790
보건 <del>복</del> 지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2-2652	044-202-3989
エピラハナ	야) 당직실	044-202-2118	044-202-3985
	비상안전담당관	044-201-6493~4	044-201-6496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6	044-201-7130
	야) 당직실	044-201-7440~1	044-201-744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02-2100-6459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6	044-202-8094
	하천계획과	044-201-3626	044-201-5558
	도로운영과	044-201-3911	044-201-5591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4	044-201-5672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33	044-201-5592
▎ <del>为工业</del> 贡⊤ ▎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7	044-201-5628
	항공정보통신센터(인천)	032-740-2261	032-740-2269
	항공정보실(김포)	02-2660-2145	02-2662-5083
	당직실	044-201-4672	044-201-5700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3, 5858	044-200-5869
	종합상황실	044-200-5895~7	044-200-5886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4	044-200-5789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6	044-200-5929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7	044-861-9436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	042-481-6870	042-472-3292
	치안상황실	02-3150-1234	02-3150-3657~8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3657~8
020	교통안전과	02-3150-2252	02-3150-2850
	고속도로본부순찰대	02-3150-2154,2254	02-3150-2554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1	044-205-8986
100	소방상황실	044-205-6119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063-238-1041~4	063-238-1780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042-481-3223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119	042-481-4235
	당직실	042-481-4151	
	예보정책과	02-2181-0493, 0502	02-847-4419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070-7850-6365	064-805-0366
	국가기상센터	02-2181-0672~5	02-836-6755

-1 -1	ш	연락처	
기 관	부 서	전 화	팩 스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	044-415-1131	044-415-1148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445	032-835-2846
	경비과	032-835-2141	032-835-2941
	해양경찰상황센터	032-835-2148	032-835-2991
	종합상황실	032-835-2142	032-835-8182
한강홍수통제소	소장	02)590-9900	02-590-9905
	운영지원과	02)590-9915	02-590-9919
	예보통제과	02)590-6105	02-590-9949
	야) 당직실	02)590-9920-1	02-590-9929
한국철도공사	관제운영실	042-615-4800	042-472-3079
	시스템안전처	042-615-4182,3871	042-361-8275
	토목구조물처	042-615-4508,4502	042-361-8307
	재해대책본부	042-615-4804~8	042-361-8307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난대책본부상황실	042-607-4001~2	042-607-4009
	안전품질실	042-607-3352	042-607-3309
	당직실	042-607-3000	042-607-4000
한국전력공사	(주)배전운영처	061-345-8831~7	061-345-4899
	(야)당직실	061-345-3203	061-345-4198
	재난종합상황실	061-345-8624	061-345-8649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안전실	042-629-3381	042-629-4829
한국도로공사	재난종합상황실	054-811-1191	054-811-1199
	재난안전처	054-811-2735	054-811-2709
	수도권본부	02-2219-6000	02-2219-6199
	강원본부	033-811-6000	033-811-6199
	대전충청본부	042-722-6000	042-722-6199
국립공원공단	안전방재처	033-769-9593	033-769-9609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지원부	043-750-1380	043-750-1924
한국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	063-716-2331~4	063-716-9627
	종합상황실(야)	063-716-2117~9	063-716-96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052-703-0614~5	052-703-0314
	당직실	052-703-0539	052-703-0330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관리실	031-910-4100	031-910-3689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	02-3272-0123	02-3272-0122

# 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02-2133-3865 02-2133-8181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051-888-2967
대구광역시	자연재난과	053-803-2654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032-440-3353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	062-613-4962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042-270-5973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052-229-415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과	044-300-3216
경기도	자연재난과	031-8008-3661
강원도	방재과	033-249-2916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043-220-2457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041-635-3252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063-280-3006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061-286-3721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054-880-2355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055-211-282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064-710-3942

# 다. 문화재청 비상연락망

212104	HUR	연 락 기	₹	¬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 스	비고
	안전기준과	042) 481-4822 (010-9387-4931)	481-4932	주간 : 안전상황실 대응 야간 : 당직실 대응 (042-481-4651) (010-2809-4600)
	운영지원과	042) 481-4638	481-4669	
	기획재정담당관	042) 481-4781	481-4799	
	창조행정담당관	042) 481-4716	481-4729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4788	481-4649	
	대변인실	042) 481-4671	481-4679	
	정보화담당관	042) 481-4760	481-4769	
	정책총괄과	042) 481-4815	481-4829	
ㅁ핆	무형문화재과	042) 481-4961	481-4979	
문화 재청	발굴제도과	042) 481-4941	481-4959	
NI O	보존정책과	042) 481-4831	481-4849	사적 관리 (현충사, 칠백의총)
	고도보존육성과	042) 481-3101	481-3109	고도지역
	신라왕경사업추진단	054) 777–6719	741-5386	신라왕경지구
	유형문화재과	042) 481-4911	481-4939	건축, 동산문화재 관리
	천연기념물과	042) 481-4981	481-4999	천연기념물, 명승 관리
	수리기술과	042) 481-4861	481-4879	
	활용정책과	042) 481-4741	481-4749	
	궁능유적본부	02) 6450-3821	6450-3898	궁・능・원 관리
	국제협력과	042) 481-4731	481-4759	
	근대문화재과	042) 481-4881	481-4899	국가민속문화재,근대사적, 등록문화재 관리
한국전	[통문화대학교	041) 830-7210	830-7030	
국립고	]궁박물관	02) 3701-7610	3701-7620	
현충시	·관리소	041) 539-4602	539-4650	
세종대왕유적관리소		031) 885-3124	885-3125	
칠백의	총관리소	041) 753-8701	753-5700	
만인으	총관리소	063) 636-9321	636-9327	

212104	HUR	연 락 쳐	<del>.</del>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 스	비고
경복궁관리소		02) 3700-3900~1	3700-3909	
창덕궁관리소		02) 762-9513	762-2070	
덕수궁관리소		02) 771-9952	771-9953	
창경궁	관리소	02) 762-9515	762-9514	
종묘관	리소 (사직단 포함)	02) 762-3552	3672-4332	
조선왕	릉관리소	02) 739-7828	739-7832	
동부지	구관리소 (동구릉)	031) 563-2909	569-3346	
중부지	구관리소 (태릉)	02) 972-0370	972-6301	
서부지	구관리소 (서오릉)	02) 359-0090	359-0068	
국립무	형유산원	063) 280-1400	280-1429	
	행정운영과	042) 860-9120	861-4923	
	연구기획과	042) 860-9131	861-5233	
	고고연구실	042) 860-9170	861-4924	
국립	미술문화재연구실	042) 860-9191	861-4925	
문화재 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042) 860-9211	861-4926	
	보존과학연구실	042) 860-9252	861-4928	
	복원기술연구실	042) 860-9341	861-5168	
	안전방재연구실	042) 860-9216	860-9238	
국립경	- 주문화재연구소	054) 777-8820	777-8893	
국립부	여문화재연구소	041) 830-5620	830-5629	
국립가	야문화재연구소	055) 211-9002	211-9012	
국립나	주문화재연구소	061) 339-1110	339-1119	
국립중	원문화재연구소	043) 850-7802	855-8964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032) 930-0020	932-9407	
국립완	주문화재연구소	063) 291-6505	932-9407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042) 860-9361	860-9497	문화재 보존처리
국립해	양문화재연구소	061) 270-2021	270-2039	

# Ⅷ. 부록

# 1. 보고서식

# 1-1. 보고 서식 (지자체 → 문화재청)

# 문화재 재난상황 발생보고

즉시 보고

□ 보고기관 :	□ 보고자 :	(연락처 :	)
조치사항			
	□ 기 타:		
피해상황	□ 인 명:		
	□ 문화재 :		
	□ 상 황:		
발생개요			
	□ 장 소 : □ 원 인 :		
	□ 일 시:		
 재난종류			

### 1-2. 보고 서식 (내부 보고용)

# ○○재난 관련, 피해 및 조치 현황 보고(0보)

[안전기준과 / 년 월 일(요일) 시간 ]

### □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파악매체 등)
- o 일시 / 장소 : ①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장소)
  - ②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장소)
- ㅇ 문화재피해현황
  - 총 피해현황 : 지정문화재 00건 (국가지정 00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00건)
  - 주요 피해문화재 : 불국사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정자석 이격 등

# □ 조치사항

- (시간대별 대응조치사항, 복구인력 장비 동원, 복구내용 등)
- 20:20 경주시 담당자(000)와 통화 (안전기준과 → 경주시)
   \*20:20기준 접수된 문화재 피해현황 없음 확인, 상황지속유지 요청
- 20:50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000)와 통화 (안전기준과 → 경북도)
- o 20:56 경주지역 풍수해발생관련 접수된 문화재피해 없음 보고(안전기준과→당직실)

# □ 언론보도 동향

○ (YTN등 매스컴 보도 여부, 보도시간, 사회적 이슈화 여부 등)

# □ 향후조치계획

- (복구지원, 응급대책 실시 등 추가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
- o 문화재 피해 관련 긴급보수비 최우선 지원 (23억)
- o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첨성대 등 주요문화재 정밀계측조사 실시 후 긴급대책 수립

부	OI	1

# 문화재 피해 세부현황

□ 총 피해현황 : 지정문화재 00건

			광역1			광역2			광역3	
구분	합계	소계	기초1	기초2	소계	기초1	기초2	소계	기초1	기초2
총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 □ 세부 피해현황

# ㅇ 국가지정문화재(00건)

문화재명	지정별	피해내용	비고
불국사	사적 제502호 국보 제20호 등	다보탑(국보 20) 난간석 접합부 탈락 대응전(보물 1744) 지붕 및 담장 기와 일부 파손 대응전 용마루 파손 관음전 담장기와 일부 파손 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 등	
석굴암 주변	국보 제24호	일주문에서 석굴암 진입로 낙석	

# ○ 시·도지정문화재(00건)

문화재명	지정별	피해내용	비고

# ○ 문화재자료(00건)

문화재명	지정별	피해내용	비고

# 1-3. 조치내용 체크리스트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	조치	
, 4		여부	부서	
	풍수해(태풍·호우,대설) 피해접수			
초동대응	주요간부 및 해당소관과 재난상황 보고·전파			
	주요 관계기관 재난상황 보고·전파		상황반	
	주요상황 간략보고서 작성 및 보고			
	(요청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근무자 편성			
	상황대비 비상근무자 편성 및 비상응소			
	추가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피해현황 집계		상황반	
대응조직	상황판단회의 개최			
구성•운영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언론 대응반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현지 조사단	
	창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방문 수행		ઢી જી.મી.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투입계획 수립 및 지원		상황반	
긴급대응 조 치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해당 문화재 소관과	
	풍수해재난 피해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피 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해당 문화재 소관과	
부구활동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사하내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상황반	

<sup>\*</sup>실제 재난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2. 과거 피해 사례

# 가. 태풍(국내)

태풍명	기간	최대 일	피해 지역	피히	H 현황
네ઠ의	기신	강우량(mm)	씌에 시덕	인명(명)	재산(억원)
재니스	'95.8.19~8.30	보령 361	경기, 강원, 충남, 충북	65	4,562
예니	'98.9.29~10.1	포항 516	경기 제외 전 시도	57	2,749
올가	'99.7.23~8. 4	철원 280	전 시도	67	10,490
쁘라삐룬	'00.8.23~9. 1	군산 645	전 시도	28	2,520
루사	'02.8.30~9. 1	강릉 870	전 시도	246	51,479
매미	'03.9.12~9.13	남해 453	서울·인천제외 전 시도	131	42,225
메기	′04.8.17~8.19	완도 377	전라, 경상, 경기, 강원	7	2,508
나리	′07.9.13~9.18	제주 598	제주, 전남, 경남	16	1,592
뎬무	'10.8.9~8.12	제주 643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상, 제주	1	35
곤파스	′10.9.1~9.3	산청 141	전 시도	6	1,674
볼라벤, 덴빈	′12.8.25~8.30	진도 244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15	6,365
산바	′12.9.14~9.17	제주 405	서울·인천제외 전 시도	2	3,657
차바	′16.10.3~10.6	제주 268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2,150
쁘라삐룬	′18.7.2~4	울산 188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1	64
솔릭	'18.8.22~24	제주 90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93
콩레이	'18.10.4~7	제주 520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549

# 나. 태풍(국외)

디프며	7171	피해 지역	피해	현황
태풍명	기간	피애 시역	인명(명)	재산(조원)
베라	'59.9.21~9.28	일본 중부, 동부, 북동부	4,580	20
아이다	'58.9.20~9.27	일본 동남부	1,269	22
낸시	′61.9.7~9.17	일본 전역	191	50
볼라	′70.11.7~11.13	방글라데시	500,000	-
베이브	′77.9.2~9.12	대만, 일본, 중국 상해	17	2
앤드류	′92.8.16~8.28	바하마, 플로리다	21	25
카트리나	'05.8.23~8.30	미국 남동부(뉴올리온즈)	2,541	118
나르기스	′08.4.27~5.3	미얀마	133,600	100
쿠스타프	′08.8.25~9.1	미국 동남부, 서인도제도	138	120
이고르	'10.9.8~9.21	캐나다 뉴펀들랜드	4	1
토마스	′10.29~11.7	쿠바, 아이티	69	13
샌디	'12.10.29~10.31	미국 남부(뉴저지)	110	55
워시	'12.12.15~12.19	필리핀 남부지역	632	49
하이엔	'13.11.4~11.11	필리핀 베트남	7,890	1

# 다. 대설

기간	최고 적설량(cm)	피해 지역	피해 유형
'18.3.7~3.9	봉화 10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137억원 (교통통제) 부산·울산·경남 제설경험 부족으로 교통통제 등 과잉제설
'17.1.19~1.20	고성 47	서울,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교통통제) 동해고속도로, 국도7호선 정체, 세종시 이면도로 교통정체
'16.1.19~2.3	울릉 137	울릉도	(생필품부족) 제설 지연 및 풍랑으로 신선식품, 난방연료 등 운반 화물선 미운항
'16.1.23~1.25	제주산간 131 평지 16	제주	(교통통제) 3일간 항공기 통제, 체류객 86천여명, 노숙승객 4천여명 발생 공항도로 및 시내도로 교통정체
′16.1.17~1.25	정읍 37	광주, 전라, 제주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185억원
'14.12.8	울산 4	부산, 울산, 경남	(교통통제) 창원터널 진입도로 등 부산· 울산·경남 지역 출근시간대 교통정체
′14.12.1~12.6	태안 28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상, 제주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145억원
'14.2.6~2.14	강릉 110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인명피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울산 공장붕괴(3명) (재산피해) 주택, 비닐하우스 등 180억원 (도로통제) 눈사태로 미시령·한계령 통제 및 차량 7개 고립
'12.12.28	경주 13	부산, 대구, 울산, 충청, 전라,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89억원 (도로통제) 부산, 대구, 경남지역 교통마비
′11.2.11~2.14	동해 134	울산, 강원,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360억원 (도로통제) 영동선 진부~강릉구간, 국도 7호선 산척 근덕~원덕구간
′10.12.29~ ′11.1.4	영암 44	서울, 인천, 경기, 전라, 경북, 제주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383억원 (도로통제) 두목재(진도) 등 6개 구간 - 포항시 전지역 교통정체
'10.3.9~3.10	대관령 110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청, 전북,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240억원
′09.1.23~1.25	당진 47	경기, 충청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83억원

# 3.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 기본 방향 **〉** --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문자 전송시스템(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 표준문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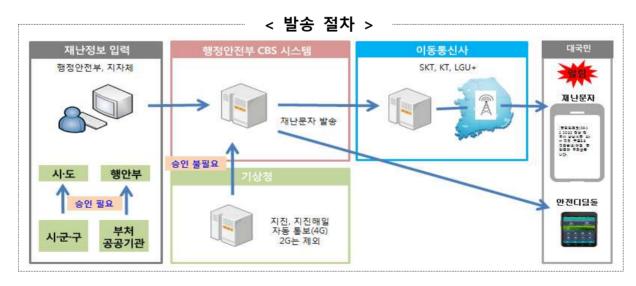
nd +1		т <b>х о</b> оь
명 칭		표 준 문 안
태풍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 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경보.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호우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홍수	4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 발표. 방송 등을 통해 홍수상황을 확인하시고,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보	2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 발표.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4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표,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으니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2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표.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대설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발표 지붕 및 집 앞 눈 치우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 체인 구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대중교통 이용, 내 집 앞 눈 치우기, 눈길 미끄럼 주의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 ① 긴급 재난문자 방송 서비스(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 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 시 최대 230여자 ※ 경보음 동시 송출, 기지국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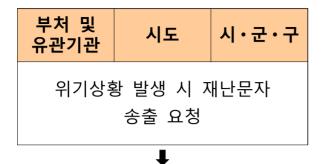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 발송절차



 사용기관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시・군・구는 '19.9.11부터 시행 예정

- 각 승인권자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2G, 4G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국민**(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외부망 공통) : https://www.ndms.go.kr



### ②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 개 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 시스템 체계

기상청		행정안전부	III <b>&gt;</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I-	각 방송사
기상특보	행정망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행정망	비상안전기획관실	전용地	수도권, 지방

###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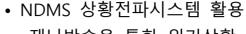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 발송절차

####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지원 요청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방송 요청 검토 및 통보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에 재난방송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괴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송출



#### 국민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

# ③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 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2015.6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44	40	246	17	41
사용자수	16,983	2,797	13,128	540	518

# □ 시스템 개념도



# □ 메시지 작성 화면



# 4. 영상회의 시스템

# □개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 (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ul> <li>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18부</li> <li>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li> </ul>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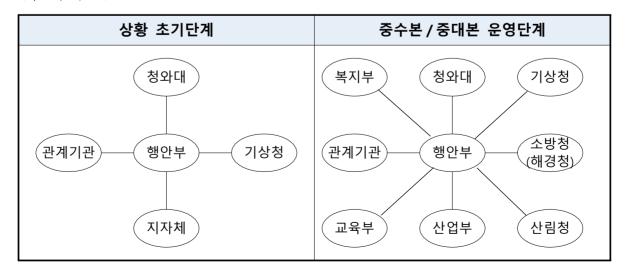
###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VIP주재 회의운영 사례 : 태풍 "솔릭"('18.8.23.), "솔릭"('19.9.6.) 대처 긴급점검회의 등

### ○ (참여기관)



-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 예 :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수습 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 운영 절차

#### 소관 부처

영상회의 연계 요청

• 회의계획 수립(참여기관 선정) 및 영상회의연계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 참여기관 영상회의

상황 공유 및 논의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유선 연락\*하여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요청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연재난팀원(044-205-1551)
- 재난발생현황, 대비태세, 협력지원체계, 대응조치 등 점검을 통한 총괄·조정

# 5.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 기본 원칙

- 신속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 해야 한다.
- 일관성 :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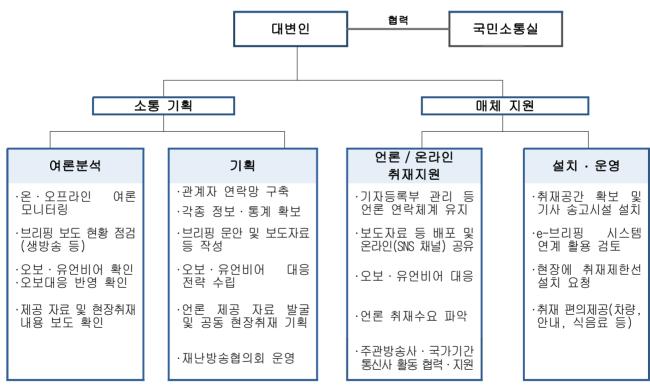
## □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ul> <li>'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li> <li>피해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li> <li>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 확보</li> <li>타 부처 위기상황 전파 등 협업가능 SNS 매체 파악</li> </ul>	
		<ul> <li>온·오프라인 위기징후 파악 및 상황 분석</li> <li>위기 유형과 단계별 전파가 필요한 콘텐츠 점검과 준비</li> <li>피해발생 예상 시 예방요령 온라인 홍보 전개</li> </ul>	
위기(crisis)	위기발생	<ul> <li>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li> <li>위기 비상체제 가동 여부 결정</li> <li>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본부 설치 여부 결정</li> <li>응급임무 부여 / 비상근무 개시</li> </ul>	
The Identition	SIS)	• 여론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현황 점검 - 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	

위기	단계	점검사항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ul> <li>위기 언론대응</li> <li>기자 연락</li> <li>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li> <li>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보도준칙 공유</li> <li>재난방송협의회 운영</li> <li>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li> <li>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li> <li>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li> </ul>		
		<ul> <li>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li> <li>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li> <li>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li> <li>공식 브리핑자료 활용</li> </ul>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 결과 브리핑 - 온·오프라인 전파·확산		
위기 후 (post-crisis)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온·오프라인 여론 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ul> <li>회복 프로그램</li> <li>상황관리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내용 전파</li> <li>내부 조직원 결속 프로그램 가동</li> <li>대외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세부사항 전파</li> <li>언론사 및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서신 발송</li> <li>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li> </ul>		

##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청장)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 각 대변인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며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ㅇ 홍보협의 위해 관계기관 간 연락체계 유지
- o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보유매체 활용 및 범부처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지원,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 필요시 취재 지원 인력 파견, △ 취재제한선 조율 등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 재난현장 관할 지자체(시·군·구) 홍보담당자를 반드시 포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핫라인을 통한다.

##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거짓 정보 등을 초기에 발견·정리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해명하여 소멸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언론에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 마. 언론 및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온라인채널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의 대응상황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브리핑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어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도 해명 글을 게재하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 특히 실시간 파급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동영상 형태의 행동요령 콘텐츠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 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이재민 임시구호소 등에도 취재 제한선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들은 취재기자 리스트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소)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 (기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 (취재지원팀의 배치)

- 어론지워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세터 설치·유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 (매체)	
<ul><li>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li><li>인구통계적 특성</li><li>피해규모(정도)</li></ul>	- 진행상황/사실 전달 - 집회/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 붙임 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ul> <li>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li> <li>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li> <li>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li> <li>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li> <li>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li>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li> <li>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li> <li>사과 및 책임감 표현</li> <li>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li> <li>관계 개선 노력</li> <li>이미지 개선 노력</li> <li>이미지 개선 노력</li> </ul>	<ul> <li>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li> <li>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li> <li>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공개, 상황 공유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li> <li>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li> <li>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루머를 최소화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이끌어낼수 있어야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소통</li> <li>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 있는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필요</li> <li>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li> <li>참여형소통방안</li> <li>소셜미디어등 온라인 매체 적극활용</li> </ul>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 책임인 경우	<ul> <li>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li> <li>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메시지 통일</li> <li>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li> <li>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li> </ul>	<ul> <li>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li> <li>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li> <li>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li> <li>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li> </ul>

# 6. 기상정보 수집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명		주소	비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		http://afso.kma.go.kr http://10.28.65.41	외부망 내부망
	재난영상정보 CCTV통합·연계시스템	재난영상정보 통합 연계시스템 -IP설정: 10.175.102.29 -포트: 17000 -내부네트워크 사용체크 안함	상황실 승인받은 컴퓨터만 가능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http://www.utic.go.kr	외부망
CCTV	국토부 국가교통정보센터	http://its.go.kr	외부망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센터	http://roadplus.co.kr	외부망
	도로공사 전용회선 CCTV	http://20.32.10.123(외부망)	상황실 승인받은 컴퓨터만 가능
대국민	안전디딤돌 앱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애
안전 정보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내부망
	태풍예상진로 (미국, 일본 등)	http://www.typhoon2000.ph	외부망
	태풍연구센터	http://www.typhoon.or.kr	외부망
태풍	유럽기상모델	http://www.windy.com	외부망
	어스널스쿨	http://earth.nullschool.net	외부망
	JTWC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	http://www.metoc.navy.mil/jtwc	외부망
풍	수피해예측시스템	http://khazard.go.kr	내부망
	한강홍수통제소	http://www.hrfco.go.kr	외부망
4대	낙동강홍수통제소	http://www.nakdongriver.go.kr	외부망
홍수 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http://www.geumriver.go.kr	외부망
0 1 11	영산강홍수통제소	http://www.yeongsanriver.go.kr	외부망
산사태정보시스템		http://map.forest.go.kr	외부망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외부망
댐/보 수문정보시스템		http://dam.kwater.or.kr	외부망
4대강 Web Camera		http://4river01.rifatron.net:3001 http://pm4river.go.kr	상황실 승인받은 컴퓨터만 가능
	일본 기상청	http://www.jma.go.jp/en/typh	외부망

# 7. 위기경보 발령사항 전파기관

## ○ 유관기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안전환경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비상안전기획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비상안전기획관), 환경부(비상안전 담당관),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도로운영과),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경찰청(위기관리센터), 소방청(119구조과), 문화재청(안전기준과),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 기상청(예보정책과),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 ○ 지방자치단체(해당지역만 발령)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태풍·호우, 도로관리과-대설), 부산광역시(재난대응과),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 광주광역시(재난대응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과),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 경기도(자연재난과), 강원도(방재과), 충청북도(자연재난과),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전라북도(자연재난과), 전라남도(자연재난과),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경상남도(재난대응과), 제주도(재난대응과)

##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전달 체계

## □ 구축 개요

○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국 대사관에 통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내용)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 전달 체계



- (외교부) 주한 공관 비상연락망 정보 제공 \* 반기별 업데이트 실시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존재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해당 피해자 인적정보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대형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비상연락망 통해 해당 외국인 국적 주한 공관에 피해 현황 통보
  - (1차) 현황 유선통보 (2차) 사망자 존재시 상세정보 공문/팩스로 전달
  - \* 경찰은 일선 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법정양식에 따라 재외공관에 공문 팩스 통보(1차), 다만, 해경의 경우는 일선 서(1차) 뿐만 아니라 본부 국제과에서 추가 팩스 유선통보(2차)

#### 【 수습사례 】

- ▶ '18.2.28. 어선 전복사고로 인도네시아 사망자(선원) 인적정보 제공, 영사관 통보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부산출장소)에서 시신인계(3.2), 항공편으로 본국 인도(3.4)

##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대상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참조

○ 주 재 : 행정안전부장관

○ 참 석 : 풍수해 대처 관련기관에 소속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방부: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 경찰: 치안감 이상, 소방: 소방감 이상)

○ 대상기관 : <del>방송통신위원회,</del>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및 그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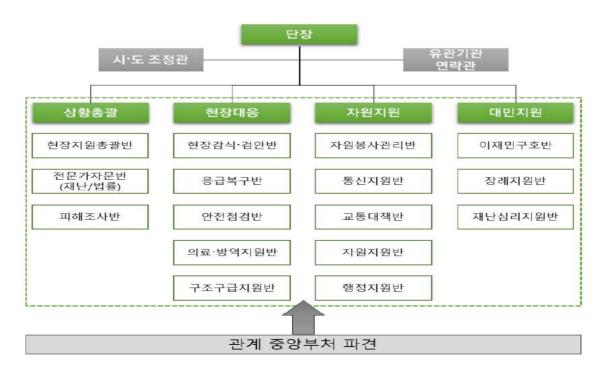
## ○ 심의·협의 사항

-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0. 수습지원단의 임무와 편제

- □ 목 **적**(「재난안전법」제14조의2)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혐지에 파격할 수 있음
- □ 임 무(「재난안전법 시행령」제18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 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 □ 편 제



※ 수습지원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 관리

# 11.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평균풍속 14째이상 또는 순간풍속 20째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평균풍속 17째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째 이상이 예상될 때	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째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 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 상될 때	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 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 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종류	주 의 보	경 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랑·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대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이상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g/㎡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 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 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 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 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도 별 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 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 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도 별 도지정

# ※ 태풍의 강도 및 크기

태풍의 강도		태풍의 크기		
구 분	고 분 최 대 풍 속		풍속 15m/s 이상의 반경	
_	17‰ 이상 ~ 25‰ 미만	소형	300㎞ 미만	
중	25% 이상 ~ 33% 미만	중형	300㎞ 이상 ~ 500㎞ 미만	
강	33째 이상 ~ 44째 미만	대형	500km 이상 ~ 800km 미만	
매우강	44% 이상 ~	초대형	800㎞ 이상 ~	

# 12. 폭풍해일 특보 발표기준

.)	검조소명	기준	값(cm)	-1.71 -1.11
시・군명	(국립해양조사원)	주의보	경보	- 관할관서 -
김포시				
인천광역시	인천	004	1010	
강화군		994	1010	
시흥시				수도권기상청
안산시	۵۱ یا	0.40	0.60	
화성시	안산	940	960	
평택시	평택	1010	1030	
당진시	الم الت	001	0.41	
서산시	대산	921	941	
태안군	안흥	769	789	નો ગો ગો મો.ગો ઢો.ગો
홍성군	<b>ਪ</b> ੜੀ	044	964	대전지방기상청
보령시	보령	844	864	
서천군	장항	808	828	
군산시				
김제시	군산외항	790	810	고 즈 기 자나기 원
부안군				전주기상지청
고창군	영광	770	790	
영광군	영광	770	790	
함평군	66	770	790	
무안군				
신안군(흑산면제외)	목포	F20	F40	
목포시	<b>宁</b>	520	540	
영암군				
진도군	진도	447	467	
흑산도・홍도	대흑산도	430	450	
해남군				광주지방기상청 
완도군	완도	460	480	* 경구시청기경경 
강진군	ゼエ	460	400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고홍	421	441	
거문도				
여수시	여수			
순천시		420	440	
광양시				

) 7 Pd	검조소명	기준집	값(cm)	기취기기
시・군명	검조소명 (국립해양조사원)	주의보	경보	- 관할관서
하동군	여수	420	440	
남해군		420	110	
사천시				
고성군	통영	320	370	
통영시				부산지방기상청
거제시	거제	231	281	
창원시	마산	240	290	
부산광역시	부산	160	210	
울산광역시	울산	120	170	
경주시	포항	100	150	
포항시	至3	100	150	
영덕군	ភិ ប <u>ា</u>	80	130	대구지방기상청
울진군	후포	00	130	
울릉도・독도	울릉도	80	130	
삼척시				
동해시	묵호	80	130	
강릉시				기이키네키카카
양양군				- 강원지방기상청
고성군	속초	80	130	
속초시				
제주도북부	제주	318	328	
제주도동부	성산포	296	306	레즈리바리카리
제주도서부	모슬포	324	334	-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도남부	서귀포	346	356	

# 13. 위기평가 보고서

	_		
위기유형			
경보내용	위기경보 "○○"	발령	
보고번호		기 관 명	행정안전부
관련근거 (출처)			
통보기관			
1. 관련상황/	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사항			
작 성 자			

# 14. 태풍 일자별 조치목록

조 치 목 록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비고
태풍정보 확인·분석	0	0	0	0	0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0	0	0	0	0	
태풍진행상황의 보고 및 전파	0	0	0	0	0	
상황판단회의 개최		0	0	0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관심 지속	주의	경계	심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0	0	0	0	0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비상 근무 강화지시		0	0	0	0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처 상황 확인		0	0	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응조치			0	0		
각 기관별 소관사항 이행요청 및 확인		0	0	0	0	
대국민 홍보 강화(국민행동요령 집중홍보)		0	0	0	0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0	0	0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0	0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긴급지원 체계 가동				0	0	

## 15.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 □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

#### □ 응급조치

- (지역통제단장, 시·군·구청장) 재난시 수방·진화·구조·구난,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시설 응급복구, 방역·방범 질서유지, 긴급 수송·구조 수단·급수 및 피난처·구호품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을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 및 시·군·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

### □ 재난의 예보·경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시 예·경보 등을 위해 민방위경보 시스템 사용, 통신시설 우선사용, 방송시설 사용, 신문 및 인터넷 게재 등 요청할 수 있음

### □ 동원명령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시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직원, 물자, 장비 등 동원과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 대피명령·위험구역의 설정·강제대피·통행제한

시·군·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① (대피명령) 해당지역의 주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
- ② (위험구역 설정) 필요시 위험구역의 설정, 출입제한 등의 조치
- ③ (강제대피) 대피명령의 불이행이나 위급성이 판단되면 위험구역안의 주민 강제대피·퇴거 및 선박·자동차 견인,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 ④ (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의 수송, 구조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통행금지 등 요청

# 16. 풍수해관리시스템 활용법

## 가. 시스템 접속(내부망)

- 상황전파메신저에서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 → 재난지원업무 → 국가수문기상재난공동활용시스템→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클릭 → 재해상황분석(여름철) 클릭 또는 풍수해관리시스템(khazard.go.kr) → GPKI 또는 ID/PW로그인 → 국가수문기상재난공동활용시스템 →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클릭 → 재해상황분석(여름철) 클릭
  - \* NDMS계정 없으면 회원가입(문의:044-205-8462)

### 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 피해예측, 의사결정 확인하기(사용자 매뉴얼 확인 : 시스템 공지사항 게재19.3.4)

	풍수해관리시스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측시스템	시스템 화면
No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1			AWS	■ \$5420088000
2		관측강우	표준유역	→ 7-2452         4         2000/00/2016 - 0.00 (AMD 0.00)         2000/00/2016 - 0.00 (AMD 0.00)         27         4000/2016 - 0.00 (AMD 0.00)         4000/2016 - 0.00 (AMD 0.00)         2000/2016 - 0.00
3			소하천유역	○ 0.000
4	기상정보	수위/유량		■ 24 00043     ▼       ■ 20142 3224     ▼       20142 3224     ▼
5			6시간 예측	# 4422 - A27
6		예측 강우	36시간 예측	● REFERENCE         - APPL         85         68-56         ALS         SSD         80         AS         80         80         80         100 <th< td=""></th<>
7			주간 예측	REAL   REAL   TOTAL   REAL   TOTAL   TOTAL   REAL   TOTAL   TOTAL   REAL   TOTAL
8	6시간 피해예측현황			Company   Comp
9		호우		Test
10		태풍		SERVICES IN STREET OF THE STR
11	주간피해예측	대설		The control of the
12		통계기반 모의	강풍	Veg. 39Me   384   481   44MN ⊕ ⊕ ⊕ ⊕ ⊕ ⊕ ⊕ ⊕ ⊕ ⊕ ⊕ ⊕ ⊕ ⊕ ⊕ ⊕ ⊕ ⊕ ⊕
13		중계시한 포의	풍랑	Will State   Will State   O   O   O   O   O   O   O   O   O

	풍수해관리시스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측시스템	시스템 화면
No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14		분석		10   10   10   10   10   10   10   10
15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조회		
16		하천		** 3550
17		침수예상도		0 00012844 - 0 0001
18	의사결정	침수흔적도		# SHEET
19	기사결정	둔치주차장		10.20 80% 804 2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20		재해우려지역	여름철	2 20% ES 40 CONTACTOR CONT
21		배수펌프장		TE 8005 884 92 (00124 ESERGIOCOGGGG )  SS 8005 884 92 (00124 ESERGIOCOGGGG )  SS 8005 884 92 (00124 ESERGIOCOGGGG )  SS 8005 884 92 (00124 ESERGIOCOGGG )

# 다. 재해상황분석시스템(여름철)

- 방재정보기상시스템의 다양한 연결 제공
  -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가입 필수(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가입 방법 190참조)

		수해관리시스템 상황분석(여름철)	방재기상정보시스템	
No	메뉴	방재기상연결 메뉴	메뉴	실제연결메뉴
1		중기예보	예보 - 중기예보 - 육상예보	예보 > 중기예보
2		3시간누적강수	호우-일기도-기본예상도-3시간누적강수량-UM전구	호우>일기도>예상일기도
3	호우	예상일기도	호우-일기도-기본예상도-해면기압,누적강수량-UM전구	호우>일기도>예상일기도
4		특보발효현황	호우 - 호우실황 - 특보 - 특보 발효현황	호우 > 호우실황
5		특보요약	특정보 - 특정보 - 특보요약 - 발표기준	특정보>특정보>특보요약
6		AWS(문숫자)	호우 - AWS - 문숫자 - 관측:매분	호우>AWS>문숫자
7	강수	AWS(정렬2)	호우 - AWS - 정렬2 - 시간강수합	호우>AWS>정렬2
8	위험 지역	레이더영상(HSR)	호우 — 레이더/낙뢰	호우>레이더/낙뢰
9	717	초단기강수예측	예보 - 초단기강수예측	예보>초단기강수예측
10		AWS(문숫자)	호우 - AWS - 문숫자 - 관측:매분	태풍>AWS>문숫자
11		AWS(정렬2)	호우 - AWS - 정렬2 - 시간강수합	태풍>AWS>정렬2
12	പി ച	레이더영상(HSR)	호우 - 레이더/낙뢰	태풍>레이더/낙뢰
13	태풍	초단기강수예측	예보 - 초단기강수예측	예보>초단기강수예측
14		태풍종합	태풍 - 태풍종합	태풍>태풍종합
15		해수면온도	태풍 - 일기도 - 위험기상 - 해수면온도	태풍>일기도>위험기상

○ 호우·태풍 각종 확인하기(사용자 매뉴얼 확인 : 시스템 공지사항 게재19.3.4)

호우 태풍		시스템 화면
,	시스템접속	WHOSPING TO GO OFFICE O SE TO ARROY SERVED SERVED TO THE TOTAL SERVED SERVED TO THE TOTAL SERVED SER
호우특보	태풍특보	1
과거호우 피해현황	과거 태풍(제원)	
호우 상세피해 현황	과거 태풍 피해내역	#####################################
	행정안전부 선택 유사태풍	
られやら	실시간 유사태풍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유사호우 제공예정	유사태풍 제원	100 May 200 Ma
	유사태풍 상세내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현재	위험강우지역	
댐.하천	수위 위험지역	© 64 OF SECTION OF THE PROPERTY AND A SECTION OF THE PROPERTY AND
3시간 여	측 위험강우지역	**************************************
강우위험지	역내 재해우려지역	100 AND AND 100 AND 10
재해우려지역 사진 및 사전설명 등록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호우 자료확인	태풍 자료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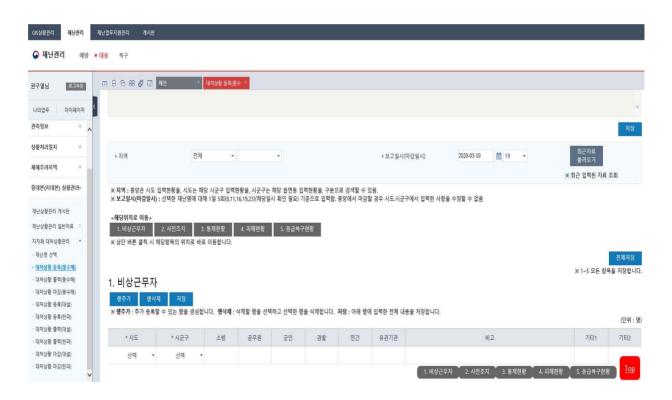
# 라. 비상근무자가 담당 지역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실시

- ①재난영상CCTV(상단 메뉴) → ②아이콘표출 → ③현장영상 표출 →
   ④재난영상CCTV(우측 메뉴) → ⑤ CCTV 용도별 지역별 검색창
  - A C D D MATERIAL DE LA CONTRE SONT AND DE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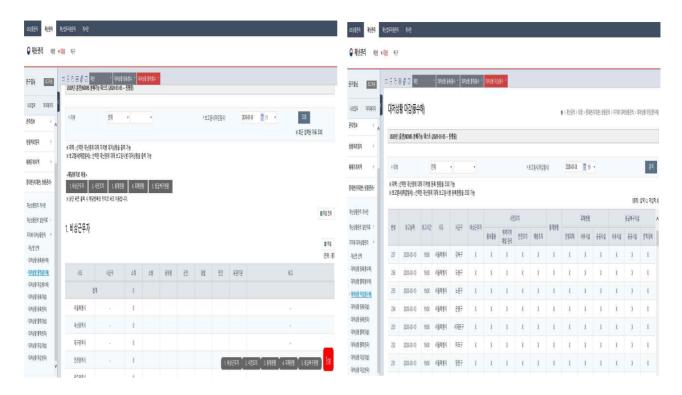
## 17. 지자체 피해·대처상황 파악 요령(NDMS 활용)

#### 가. 대설 지자체 대처상황 조회

- ① 재난선택 절차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http://www.ndms.go.kr) 접속 → 재난관리 → 복구 → 재난선택 → 재해내역조회/선택 → "해당 재난 클릭"
- ② 지자체 대처상황 동록 지시
  - 재난관리 → 대응 → 중대본(지대본) 상황관리 → 지자체 대처상황관리 → 대 처상황 등록(풍수해)



- ③ 지자체 대처상황 확인 및 마감
  - 대처상황 확인 : 재난관리 → 대응 → 중대본(지대본) 상황관리 → 지자체 대 처상황관리 → 대처상황 출력(풍수해)
  - 대처상황 마감 : 재난관리 → 대응 → 중대본(지대본) 상황관리 → 지자체 대 처상황관리 → 대처상황 마감(풍수해)



### 나. 공공시설 피해내역 조회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http://www.ndms.go.kr) 접속 → 재난관리 → 복 구 →재난선택 → 재해내역조회/선택 → "해당 재난 클릭"
- 피해내역 조회 절차 : 재난관리 → 복구 → 자연재난 → 공공시설관리
  - (조회) 지역 선택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출력) 부처별, 집계보고서, 상세보고서 출력 가능
  - (전국 총괄보기) 공공시설 피해내역 전국 총괄보기 화면으로 이동
  - (그리드 행 더블클릭) 공공시설 피해 상세화면 이동

## 다. 사유재산 피해신고 조회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http://www.ndms.go.kr) 접속 → 재난관리 → 복 구 → 재난선택 → 재해내역조회/선택 → "해당 재난 클릭"
- 피해신고 조회 : 재난관리 → 복구 → 자연재난 → 사유재산피해신고
  - (검색) 지역, 재난지수, 조회기준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 (출력) 조회된 내용을 보고서로 출력
  - (그리드 행 더블클릭) 사유재산 피해 상세화면 이동

# 18. 주요 기상용어

# 주요 기상용어

	구	분	예보기간
7	기상특보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주의를 환하거나 경고(주의보/경보)를 하는 예보(「기상법」제2조제10호)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주의보/경보)를 하는 예보(「기상법」제2조제10호)
예비특보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상 특보의 종류, 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구역 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예보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상 특보의 종류, 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구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예보	
단기예보 (동네예보) 정시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형태, 강수확률, 강수량, 적설, 하늘상태, 풍속, 습도, 파고 등 12개 요소를 3시간 단위로 하는 모레까지의 예보 ※ 일 8회 발표: 02, 05, 08, 11, 14, 17, 20, 23시			
	중기	]예보	향후 3일~10일까지의 기상전망, 해상·육상 날씨, 최고·최저기온, 파고율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예보 ※ 일 2회 발표 06시, 18시
	장기	1개월	4주간의 주별 기압계 전망, 기온 및 강수량 예보 ※ 매주 목요일 발표
(	예보	3개월	3개월간의 월별 기압계 전망, 기온 및 강수량 예보 ※ 월 23일 발표

# 기상예보 용어

### O 하늘상태 표현

표현 용어	구름량(운량)	비고
맑음	구름이 0~5할의 상태	
구름많음	구름이 6~8할의 상태	
흐림	구름이 9~10할의 상태	

## O 바람(풍속) 강도 표현

표현 용어	바람 강도	비고
강한 바람	바람의 세기가 9~14m/s 미만	* 강풍특보 기준 - 주의보: 14m/s 이상
매우 강한 바람	바람의 세기가 특보 수준에 도달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상일 경우	또는 순간 20m/s - 경 보: 21m/s 이상 또는 순간 26m/s

## O 파고 표현

표현 용어	바람 강도	비고
높은 물결	물결의 높이가 2~3m 미만	* 풍랑특보 기준
매우 높은 물결	물결의 높이가 특보 수준에 도달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상일 경우	- 주의보: 유의파고 3m 이상 - 경 보: 유의파고 5m 이상

### O 강수 표현

표현 용어	강우 강도	비고
약한 비	1시간에 1~3mm 미만	* 강수량 및 적설은
(보통) 비	1시간에 3~15mm 미만	예보에 따라 직접
강한 비	1시간에 15 ~ 30mm 미만	(기상통보문, 기상
매우 강한 비	1시간에 30mm 이상	정보) 

※ 육안으로 확인되나 강수량(적설)을 기록하기 어려운 정도를 빗방울(눈날림)로 표현함

#### ▶ 강수량 및 적설

- 기상통보문과 기상정보에 예상강수량(적설)을 직접 표현

#### ○ 시제(時制) 표현

- 기본적으로 4개 구간의 시제를 사용하고, '아침'과 '저녁' 추가 사용

Al7L	시제	용어
시간	4개 구간	추가
00시		
03시	개벽 (00∼06시)	
06시		OF \$\frac{1}{\sqrt{1}}\$
09시	요전 (06~12시)	아침 (06~09시)
12시		
15시	오후 (12~18시)	
18시		ML
21시	밤 (18~24시)	저녁 (18~21시)
24시		

### ▶ 시제 간 경계를 표현 할 때에는 '무렵'을 사용하여 표현

(예) 자정 무렵 - 자정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시간(2시간 정도) 정오 무렵 - 정오를 기준으로 1시간 전후 시간(2시간 정도)

#### O 빈도 표현

표현 용어	설 명(의 미)	비고
한때	시제 구간 별(6시간 씩 4단계) 내에서 1/2 이하	

### O 장소 표현

### (1) 1~2단계(본청)

광역단위(1단계)	해당지역(2단계)			
<b>서울 • 경기도</b> (서울+인천+경기)	경기내륙	경기(서)해안		
경남	경남내륙	경남해안		
(부산+울산+경남)		경남님	<b>남해</b> 안	경남동해안
<b>경북</b> (대구+경북)	경북내륙	경북(동)해안		경북산지
전남	전남내륙	전남해안		
(광주+전남)		전남서해안		전남남해안
전북	전북내륙	전북(서)해안		
강원도 <b>강원영서 강원영동</b>	강원내륙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b>충남</b> (대전+세종+충남)	충남내륙		충남(서)해안	
충북	충북			
제주도	제주도해안		제주도산지	

- ※ 예상강수량 작성도 광역단위 명으로 표기를 원칙으로 함.
  - 단, 서해5도, 울릉도·독도는 지리적·기상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표기할 수 있음
- ※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는 본청에서 사용 가능
- 북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 등으로 인해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가 많음

### (2) 1~3단계(지방청)

- 특별·광역시명, 지역명 직접 표현 등 자유롭게 사용[붙임 1 참조] (전국단위의 예보표현을 위한 예보구역 명)

	표현 용어	설 명(의 미)	비고
1	전국	대한민국 전 지역	
2	중부지방	서울・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	
3	남부지방	경상도, 전라도 지역	제주도 별도표기
4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	제주도 별도표기

# (광역단위의 예보표현을 위한 예보구역 명)

표현 용어	설 명(의 미)	비고
서울·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경기도	인천, 경기도 지역	
경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와 대구, 경상북도 지역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	
강원도	강원영서, 강원영동 지역	
충청도	대전, 세종,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지역	
제주도	제주도 지역	
경남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경북	대구, 경상북도 지역	
전남	광주, 전라남도 지역	
전북	전라북도 지역	
충남	대전, 세종, 충청남도 지역	
충북	충청북도 지역	
강원영서	강원도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	
0201		
강원영동	강원도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 (가른 고서 도쿄 사천 소초 야야 테베)	
	서울·경기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서울·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경기도       인천, 경기도 지역         경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와 대구, 경상북도 지역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         강원도       강원영서, 강원영동 지역         충청도       대전, 세종,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지역         제주도       제주도 지역         경남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경북       대구, 경상북도 지역         전남       광주, 전라남도 지역         전북       전라북도 지역         충남       대전, 세종, 충청남도 지역         충분       충청북도 지역         강원도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       (양구,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평창, 회천, 홍천, 횡성)

## (해안지역의 예보표현을 위한 예보구역 명)

	표현 용어	설 명(의 미)	비고
1	서해안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서쪽 해안	
2	동해안	강원도, 경상도 동쪽 해안	
3	남해안	경상도, 전라도 남쪽 해안	
4	경기(서)해안	경기도 서쪽 해안	
5	충남(서)해안	충남 서쪽 해안	
6	전라서해안	전라도 서쪽 해안	
7	전북(서)해안	전북 서쪽 해안	
8	전남서해안	전남 서쪽 해안	
9	전남남해안	전남 남쪽 해안	
10	전남해안	전남서해안 전남남해안	
11	경남남해안	경남 남쪽 해안	
12	경남동해안	울산	
13	경남해안	경남남해안과 경남동해안	
14	경북(동)해안	경북 동쪽 해안	
15	경상동해안	경상도 동쪽 해안	
16	강원(동)해안	강원도 동쪽 해안	
17	중부서해안	경기해안과 충남해안	
18	제주도해안	제주, 서귀포(산지 제외)	

### (기타 장소표현을 위한 용어)

	표현 용어	설 명(의 미)	비고
1	산지(또는 산간)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산간과 산악, 고산의 의미를 포함)	
2	해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행정구역)	
3	내륙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해안을 제외한 육지 행정구역)	
4	일부	해당 예보 구역 전체의 50 % 미만	
5	대부분	해당 예보 구역 전체에 거의 가까운 정도	

### O 기온 표현

표현 용어	설 명(의 미)	비고
아침 최저 기온	03시에서 09시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	03시 기온 제외
낮 최고 기온	09시에서 18시 사이의 가장 높은 기온 값	09시 기온 제외

### 호우특보 구역

구분	예보구역	지역 수	관할예보관서
계		175	
서울	서울	1	수도권기상청
부산	부산	1	부산지방기상청
대구	대구	1	대구기상지청
인천	인천, 옹진, 강화	3	수도권기상청
광주	광주	1	광주지방기상청
대전	대전	1	대전지방기상청
울산	울산	1	부산지방기상청
세종	세종	1	대전지방기상청
경기도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31	수도권지방기상청
서해5도	서해5도	1	수도권지방기상청
강원도	철원, 춘천, 영월, 횡성, 화천, 태백, 원주, 강릉평지, 삼척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동해평지, 속초평지, 양구평지, 고성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21	강원지방기상청
충청북도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11	청주기상지청
충청남도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15	대전지방기상청
전라북도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14	전주기상지청
전라남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여수, 거문도·초도, 신안(흑산면제외)	23	광주지방기상청
흑산도·홍도	흑산도·홍도	1	광주지방기상청
경상북도	구미, 군위, 성주, 상주, 안동, 청송, 영덕, 경주, 영천, 청도, 칠곡, 문경, 영주, 경산, 고령, 김천, 예천, 의성, 포항, 영양평지, 울진평지,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	23	대구기상지청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	1	대구기상지청
경상남도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18	부산지방기상청
제주도	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남부, 제주도산지, 추자도	6	제주지방기상청

### 19. 국민행동요령

### 태풍

태풍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태풍 예보시

- 1.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할지를 준비합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3.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 5.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태풍 특보 중 행동요령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하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 태풍 특보 중

###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특히,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피할 때는 침수되거나 파손된 도로, 교량 주변은 피하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태풍 이후 행동요령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 태풍 이후

###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태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 1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2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3 )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 호우

평상시 행동요령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 사전준비

###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합니다.
-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2.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앱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 지역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 대피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 4.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한 곳에 준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둡니다.

### 5.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함께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호우특보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호우특보 예보시

### 1.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의 안전디딤돌 앱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3.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미리 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재난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 5.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약속된 일정은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정보를 알려 줍니다.
-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호우 중 행동요령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기족과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호우특보 중

###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호우 후 행동요령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이웃 등 주변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 호우 이후

###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2. 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2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3 )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반복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 👸 이렇게 행동하세요



호우 :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자하치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둘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 이렇게 행동하세요

### 어린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이동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도록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강한 바람이나 비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 보호자 행동요령

- 어린이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합니다.
- 재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지세로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 노약자



호우 · 태풍 등 특보가 발효된 경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득이 하게 야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자녀 · 친착 · 이웃에게 알립니다.

#### ※ 보호자 행동요령

- 호우·태풍 특보 시 부모님 등 노약지에게 외출하지 않도록 안부 전회를 합니다.
- 부모님 등 노약지와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연락 두절 시 경찰서, 관공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태풍 - 호우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mark>안전한 곳으로 대피</mark>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Typhoon/ Heavy Rain



Avoid dangerous places such as flood-prone areas and landslide hazard areas; evacuate to a safe place.



Close doors and windows and check weather conditions through TV, radio, and the Internet instead of going out.



Do not go near inundation hazard areas such as brooks, streams, and shores, where you may get swept away by the rapids.



Hikers in mountains and valleys must evacuate to a safe place rather than go near valleys or slopes.



Do not go near construction sites due to falling construction materials:



In rural areas, do not go out to check rice paddy levees or inlets for irrigation.

### 国民行动要领

### 행정안전부

# 台风·暴雨



避开经常浸水的地区、山崩危险地区等 危险的地方,<mark>逃到安全地区</mark>。



在室内关紧门窗,不外出, 通过TV、广播、网络等确认气象情况。



在溪边、河边、海边等浸水危险地区,有可能被急流卷走,请勿靠近。



山和溪谷的登山客不要靠近溪谷或倾斜面, 逃到安全的地方。



由于工程材料有可能倒塌,请勿靠近工地附近。



在农村,不要为了检查田埂或水口而外出。

### 国民行動要領

### 행정안전부

# 台風·豪雨



浸水しやすい地域、山崩れの危険地域などの 危険な場所は避け、安全な場所に避難しましょう。



屋内ではドアと窓を閉め、外出は控え、 テレビ、ラジオ、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気象情報を 確認しましょう。



小川のほとり、河川敷、海岸などの浸水の危険地域は、 急流に流される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 近づ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山と渓谷の登山客は、渓谷や傾斜面に近づかずに、 安全な場所に避難しましょう。



工事資材が倒れる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 工事現場には近づ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農村では、畔や田んぽの水口の点検のために 出かけ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 Bão, mưa lớn





Tránh các nơi nguy hiểm như khu vực thường xuyên ngập nước, khu vực có rùi ro sạt lờ, <mark>sơ tán đến nơi an toàn.</mark>



Ở trong nhà, đóng cửa ra vào và cửa số; không ra ngoài, kiểm tra tình hình khí tượng qua TV, đài và internet.



Không tới gần các khu vực có khả năng bị ngập như ven sông suối, ven biến vì có thể có nguy cơ bị cuốn đ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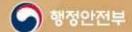


Khách leo núi không đến gần các bờ suối hay các sườn dốc, <mark>sơ tán tới nơi an toàn</mark>.



Vật liệu xây dựng có thể bị rơi xuống, <mark>nên không tới gần các công trường</mark>





# พายุไต้ฝุน• ฝนตกหนัก



หลีกเลี้ยงสถานที่อันตราย .เช่น พื้นที่น้ำท่วมบ่อย, ภูเขากลุ่ม และให้อพยพไปในสถานที่ปลอดภัย



ปิดประตูหน้าต่างในอาคาร, ไม่ออกไปซ้างนอก, ให้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ผาน วิทยุ, ทีวี, อินเตอร์เนต



พื้นที่น้ำท่วม เช่นล่าธารน้ำ, ชายฝั่ง, กระแสน้าอย่าเข้าไปใกล้เพราะอาจถูกแรงน้ำซัดได้



นักปืนเขาในภูเขาและหูบเขาอย่าเข้าไป ใกล้เนินเขาหรือหบเขา ให้อพยพไปยังที่ปลอดกัย



วัสดก่อสร้างอาจตกลงมา อข่าเข้าไปใกล้สถานที่แหล่งก่อสร้าง



เพื่อตราจสอบค้นนาหรือที่ระบายหางน้ำ

평상시 대설대비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인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음과 같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사전준비

#### 1. 내 지역의 정보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 재해위험요소는 과거 피해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합니다.

### 2.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여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합니다.

###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지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 대피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숙지하고, 어린이 등 재해약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이웃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 4. 비상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자세히 알아둡니다.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사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연료,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이 있는 가까운 자인이나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해 둡니다.



### 6. 재난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정비합니다. 대설 예보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대설이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대설이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취하도록 합니다.

### 대설 예보 시

### 1. 대설지역 및 지속시간 등을 파악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할 지를 준비합니다.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 2. 산간 고림지역·붕괴 위험시설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눈사태 위험지역, 노후주택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주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니다.
- 눈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니다.



### 3. 주택이나 차량 등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어떻게 할지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 합니다.

-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수산 증·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4. 비상용품 준비 등 재난 발생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 정보 수신을 위해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 5.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 대설이 예보된 날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몸을 따뜻이 유지하기 위해 옷을 여러 겸 겹쳐 입습니다.
- 눈길 및 빙판길 운전을 피하고,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비상구호품 및 장비를 챙깁니다.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 대설 특보 중

###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합니다.
- 노후가옥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쌓인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2.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체인, 염화칼슘, 삽 등)를 휴대합니다.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월동장비,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 확인토록 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
-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은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 3. 농·어촌, 공장 등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직원이 함께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비닐을 걷어내고,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설 후 행동요령 큰눈이 멈춘 후에는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 대설 이후

### 1.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2.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여 이동하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3. 대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대설 후, 한파가 이어져 빙판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미끄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 가스,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대설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점검 후에 출입하도록 합니다.



대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 1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2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3 )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교육부 044-203-6263, http://www.mohw.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ofra.go.kr
- 국토교통부 044-201-3918, http://www.molit.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경 찰 청 02-3150-2856, http://www.police.go.kr
- 소 방 청 044-205-7621, http://www.nfa.go.kr
- 기 상 청 02-2181-0501, http://www.kma.go.kr
- 해 경 청 044-205-2345, http://www.kcg.go.kr

### 국민행동요령

# 대설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스노제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개인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mark>운행</mark>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 **Heavy Snow**



For people in mountainous or isolated areas, prepare emergency supplies such as food and fuel.



Remove snow in front of your house as often as possible.



Prepare winter car emergency kits such as snow chains, calcium chloride, shovels, etc.



Use public transportation rather than private cars.



Drive a car at a low speed and keep a safety distance.



Call 119 when your car is isolated; check weather conditions on TV, radio, and the Internet in the car while waiting for rescue.

### 国民行动要领

# 大雪





担心被孤立的山区准备好粮食、燃料等应急用品。





准备好防滑链、氯化钙、铁锹等汽车过多用品。



减少私家车的使用,利用公共交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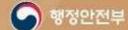
驾驶车辆时,低速驾驶并确保安全距离。



车辆被孤立时,拨打119举报, 在车内通过TV、广播、网络等 确认气象情况,等待救助。

### 国民行動要領

## 大雪





山間孤立危険地域では、食料や燃料など 非常用品を用意しましょう。





スノーチェーン、塩化カルシウム、スコップなど 自動車の防寒対策用品を用意しましょう。



公共交通を利用しましょう。



安全距離を確保しましょう。



### Hướng dẫn hành động toàn dân

# Bão tuyết





Các khu vực có nguy cơ bị cô lập như vùng núi cao, cần chuẩn bị các vật dụng khẩn cấp như lương thực, nhiên liệu



Thường xuyên dọn tuyết trước cửa nhà



Chuẩn bị sẵn các vật dụng dành cho trời tuyết trên xe ô tô như muối rắc tan tuyết, xích bọc lốp đi tuyết, xêng



Hạn chế đi xe ô tô riêng, sử dụng phương tiện công cộng



Khi lái xe, chạy với tốc độ thấp và giữ khoảng cách an toàn



Khi xe bị cô lập, báo lên 119, kiểm tra tình hình khí tượng qua TV, đài, internet trên xe, chờ cứu hộ tới.

### เคล็ดลับการปฏิบัติเมื่อเกิด



# หิมะตกหนัก



เตรียมอุปกรณ์ฉุกเฉินในพื้นที่ภูเขาที่มีค วามกังวลเรื่องอาหารเชื้อเพลิงและอื่นๆ





รียมผลิตภัณฑ์ฤดูหนาวของรถยนต์ เช่น โช่หิมะ, แคลเซียมคลอไรต์, พล้ว เป็นต้น.





เวลาที่ขับรถ ใช้ความเร็วต่ำ, ควบคุมระยะห่างที่ปลอดภัย



เวลามีรถจอดอยู่ให้โทรแจ้ง119 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จากวิทยุ, ทีวีในรถ , อินเตอร์เนต เป็นต้น และรอ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

## 소관 부서

문 화 재 청				
어라워	안전기준과	전 화	042) 481-4822	
연락처		FAX	042) 481-4932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